연구보고서

2025

08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지광운

KiRi 보험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Ⅰ.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내용 4

Ⅱ.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7
1. 신탁의 의의 7
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의의 및 구조 16
3. 소결 25

Ⅲ. 해외의 보험금신탁제도 26
1. 미국 26
2. 영국 35
3. 일본 39
4. 소결 49

Ⅳ.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관련 법제 개선방안 52
1. 규제 개선방안 52
2. 관련 법제 개선방안 71

Ⅴ. 결론 89

• 참고문헌 94

표 차례

〈표 Ⅱ-1〉 업권별 수탁고 현황 13
〈표 Ⅱ-2〉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14
〈표 Ⅱ-3〉 금융권역 및 신탁재산별 수탁고 추이 14
〈표 Ⅱ-4〉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법제 정리 24
〈표 Ⅲ-1〉 미국 보험신탁 정리 35
〈표 Ⅲ-2〉 영국 보험신탁 정리 38
〈표 Ⅲ-3〉 미국·영국 보험신탁 정리 38
〈표 Ⅲ-4〉 일본 보험신탁 정리 49
〈표 Ⅳ-1〉 규제 개선방안 정리 71
〈표 Ⅳ-2〉 자본시장법 개정안 72
〈표 Ⅳ-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75
〈표 Ⅳ-4〉 법제 개선방안 정리 86

그림 차례

〈그림 Ⅱ-1〉 재산승계 신탁 11
〈그림 Ⅱ-2〉 수익자연속신탁 11
〈그림 Ⅱ-3〉 유언대용신탁 12
〈그림 Ⅱ-4〉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구조 19
〈그림 Ⅲ-1〉 일본 생명보험 신탁의 구조 45
〈그림 Ⅳ-1〉 대만 보험금신탁 구조 59
〈그림 Ⅳ-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계약체결 구도 69

Abstract

Improvements to the Relevant Legislation to Promote Insurance Trusts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in trusts as a valuable asset management tool in an aging society, and in relation to asset securitization, retirement, and inheritance, the life insurance trust, which combines trust and insurance, has recently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The life insurance trust offers a solution by enabling the management of insurance claim rights through a trustworthy trustee. This system contributes to the stable lives of beneficiarie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it allows a professional trust company to receive and manage insurance proceeds on behalf of beneficiaries who may lack investment and management experience, thereby providing stable living expenses. For the insurance industry, it offers a new revenue stream for insurers holding a comprehensive asset trust license. Considering these aspects, this study systematically organizes the significance and legal structure of the life insurance trust. It analyzes relevant laws and operational cases in countries where insurance trusts are active,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to activate the life insurance trust as a means of insurance fund management, moving beyond existing regulatory constraints. To invigorate life insurance trusts in Korea, it's crucial to maximize the flexibility of trusts and rationalize rigid regulations. Several key areas require reform. Currently, strict limitations on trustable assets and minimum trust amounts hinder the broad application of trusts in various situations. It's essential to expand the scope of trustable assets to include coverage for illnesses and injuries, and allow insurance companies to autonomously set minimum trust standards. Additionally, the prohibition on

policy loans is an overly restrictive measure that impedes policyholders' legitimate rights. Permitting policy loans within a certain scope, while flexibly addressing potential trust asset reductions, is necessary. The restricted scope of trust beneficiaries also fails to reflect evolving family structures and philanthropic demands. Expanding beneficiary eligibility beyond direct lineal ascendants/descendants and spouses to include diverse relationships and public benefit organizations (like social welfare groups and NGOs) is vital.

Broadening the qualification for insurance agents to recommend trust products is also critical. Given that life insurance trusts primarily serve a management function rather than an investment one, the stringent qualification requirements currently imposed on investment solicitation agents are excessive. Allowing insurance agents to recommend these trust products after completing specified training and meeting more relaxed qualification criteria is indispensable for market growth. This would necessitate amendments to the Capital Markets Act or interpretive guidance to establish a legal basis. Furthermore, preventing unfair competitive practices, enhancing compliance, and refining conflict of interest frameworks are indispensable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trust market. Regulations must clearly prohibit the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s. Specific behavioral guidelines are needed to prevent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from circumventing bancassurance regulations by using life insurance trusts as a channel to sell insurance products. Regarding legal improvements, analogous application of civil and commercial law provisions to trust relationships should be permitted, as long as these principles do not conflict with the Trust Act. This is because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underlying insurance contract form the premise for trust establishment. Moreover, it's necessary to enable insurance companies to engage in trust business as an ancillary service. This would allow policyholders considering a trust to establish a trust agreement with their existing life insurer, providing a convenient and integrated means of managing insurance proceeds.

By continuously implementing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life insurance trusts can effectively serve as a vital asset management tool in an aging society, offering consumers broader choices and enhanced financial security.

요 약

현재 고령화, 자산유동화, 은퇴, 상속과 관련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유용한 제도인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자산관리수단으로서 신탁과 보험이 결합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한 번에 수중에 들어오는 거액으로, 일반적인 생활상 얻을 수 있는 수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손해 발생이나 관계자의 사망 등 보험수익자에게 심리적·사회적으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수익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금 관리에 관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설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투자 및 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유족 대신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수탁하여 유족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의의 및 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국가, 예컨대 보험금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보험금신탁 관련 법제와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금 관리의 수단으로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됨에 따라 규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엄격한 신탁대상 및 최소 수탁 금액 제한은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신탁 활용을 저

해하고 있다. 질병·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수탁 기준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허용하고, 그로 인한 신탁재산 감소는 신탁계약 종료 사유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인 신탁수익자 범위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기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직계존비속 외의 다양한 관계(사실혼, 동거인 등)와 사회복지단체, NGO 등 공익단체까지 수익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권유자격 확대도 필요하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관리형 신탁의 성격이 강하므로, 현재 투자형 상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소정의 교육 이수 및 완화된 자격 기준을 통해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불공정 경쟁 행위 방지와 컴플라이언스 강화, 이해상충 방지 체계 정비는 신탁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여 보험상품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 외에도 관련 법제 개선방안으로 민·상법규정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신탁관계에 적용되는 민·상법규정은 신탁설정의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신탁관계에 유추적용하는 것이므로 민·상법의 법리가 신탁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유추적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을 설정할지 말지 고민하는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와 신탁계약까지 맺는 것을 생각하여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고령화, 자산유동화, 은퇴, 상속과 관련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유용한 제도인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산관리 수단으로서 유용한 법률관계인 신탁과 보험이 결합하여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해 신탁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의 경우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한 번에 수중에 들어오는 거액으로, 일반적인 생활상 얻을 수 있는 수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손해 발생이나 관계자의 사망 등 보험수익자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수익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금 관리에 관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의 위험관리기능과 신탁의 재산관리기능을 결합한 것으로[1]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설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2]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했으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허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이 개정되면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됨에 따른 실익은 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1) 한기정(2009), p. 80;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p. 621~622

2)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 11. 11.),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됩니다."

받게 되는 거액의 보험금을 신탁설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과 같이 피상속인 사망 후 거액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관리 부실로 인해 탕진할 위험이 있는 자들의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수탁자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신탁수익을 지급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투자 및 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유족 대신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수탁하여 유족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대로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향후에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기존의 민·상법 규정의 적용 방안,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부수업무화 인정 방안,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과세원칙의 정립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내용

가. 연구 범위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되면서 해당 시장이 열림에 따라 신탁업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의의 및 법적 구조, 시장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은행과 증권회사가 주도하는 신탁시장에서 다른 신탁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권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의 신탁제도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신탁 관련 법제도의 체계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신탁의 법률 관계 및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의 측면 등 관련 법적 쟁점의 개선이 도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은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보험금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시한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보험금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보험신탁과 관련된 법제, 세제, 판매현황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비교법적인 검토 후 우리나라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은 신탁재산 범위 확대, 보험금청구권신탁 권유자격 규제 개선, 불공정경쟁행위 관련 규제 원칙 정립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복잡한 법률관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민·상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해석론과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세제 관련한 원칙은 어떠한 방향성에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나. 연구 내용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를 개관하는 측면에서 신탁제도 일반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신탁제도와 비교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의 의의와 구조 그리고 이를 규율하는 관련 법제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일찍부터 보험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를 규율하는 법제와 세제 및 판매현황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위탁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유족의 복지를 위해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인 신탁상품 판매채널인 투

자권유대행인 보다는 기존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보험금청구권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기존 규제체계의 문제점 외에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성화 됨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신탁업자가 불공정경쟁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경쟁법제 및 감독법상 행위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여전히 법해석론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제도에 적용되는 상법상의 규정과 민법상의 규정에 관한 유추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제Ⅳ장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Ⅱ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1. 신탁의 의의

가. 신탁법상 신탁의 의의

신탁은 '타인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재산의 관리·처분을 맡기는 법률관계로, 재산관리에서부터 상거래는 물론 공익목적으로도 활용된다.[3]

신탁법 제2조는 신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4]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5] 이에 따라 신탁의 법률관계에는 신탁관계인으로서 타인에게 재산의 관리·처분을 맡기는 위탁자, 위탁자가 맡긴 재산의 관리와 운용을 맡는 수탁자, 재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수익자가 있다.

현행 신탁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신탁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이와 같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한다."[7]

---

3) 정순섭(2021), p. 4
4) 특정한 재산에는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신탁법 제2조)
5) 세계적인 신탁제도의 동향에 대해서는 STEP(2021), pp. 9~16 참조
6) 법무부(2012), p. 2;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14
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나. 신탁의 특징

1) 재산관리 기능과 재산승계 기능의 결합

신탁에는 재산관리 기능 및 재산승계 기능이 있으며, 이 양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점에 다른 제도에는 없는 큰 특징이 있다. 특히 고령자의 재산관리의 경우 관리와 함께 많든 적든 재산승계도 의식하게 되므로, 이 측면에서 신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제도는 예컨대 위임은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신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신탁보다도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위임자의 사망으로 원칙적으로 종료되므로(민법 제690조 제1항),[8] 재산승계의 요구에는 충분히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민법 제691조는 본인 사후에도 일정한 사무의 수행이 가능함을 규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위임 종료 시의 긴급한 조치이며, 장기에 위임이 계속될 것을 예정한 제도는 아니다.[9] 그 점에서 신탁은 재산관리와 재산승계의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양쪽 모두에서 자유로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신탁은 수익자를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제도이므로, 그 전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여야 한다(신탁법 제2조, 제27조). 고령자의 재산관리 그리고 장래의 재산승계를 염두에 둔 경우의 신탁에서는 다양한 재산이 신탁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미국의 유언대용 생전신탁에서는 전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10]

신탁은 수익자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재산의 승계인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법 제60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속 수익자를 정할 수도 있다. 또 재산승계 시기나 승계를 위한 조건 등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탁에 의한 재산승계가 유언이나 상속과는 다른 방법·법적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상속·유언에 관한 규율에 전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8) 이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서 원칙적으로 위임의 종료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독일 민법이 옳다고 보는 견해로는 김용덕(2022), p. 286 참조

9) 김용덕(2021), p. 291 참조

10) Bradley E. Fogel(2014), “Trust Me? Estate Planning with Revocable Trusts, 58 St. Louis U. L.J. : 820” (세이트루이스 대학 로 리뷰)

2) 도산격리기능

신탁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자산 일부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해 신탁이 여타의 재산관리제도들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도산격리기능을 갖는다.[11] 신탁관계에서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물론, 특히 수탁자의 신용위험 제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2]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행위는 물론 국세 등 체납처분도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 신탁계약 주체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가 파산할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신탁법 제24조).

3) 안전한 자산운용 기능

현재 신탁실무에서는 대부분 신탁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탁업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갖는 구조이므로 자산운용전문가인 신탁업자를 통해 자산의 안전한 운용이 이루어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업을 인가받기 위하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금융당국 지속적 감독은 물론, 신탁업자의 재무 경영의 건전성에 관한 규제(법 제30~36조),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법 제102제~117조의2)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산운용전문가인 신탁업자는 진입규제에서 건전성, 나아가 행위규제까지 준수하여야 하므로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하는 수탁자로서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신탁의 유형

신탁은 성립의 방법, 신탁의 목적, 이익주체, 신탁의 영업성 유무, 수탁자의 재량권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11) 최수정(2023), p. 33
12) 정순섭(2021), p. 8

첫째, 신탁은 그 성립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해 성립되는 신탁을 임의신탁이라고 한다. 임의신탁은 다시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체결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신탁,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설립되는 유언신탁, 위탁자의 선언에 의하여 성립되는 신탁선언으로 구분된다(신탁법 제3조).[13]

둘째, 신탁의 목적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환경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공익신탁[14]이라고 하며, 그 외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사익신탁이라고 한다.

셋째, 이익주체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자 본인을 신탁의 수익자로 정하여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한다.[15] 반대로 위탁자가 위탁자 이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정하여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한다.[16]

넷째, 신탁이 영업성을 갖는가에 따라 수탁자가 영업으로 신탁을 인수하면 이를 영리신탁이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탁을 비영리신탁이라고 한다. 영리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상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영리신탁의 수탁자는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섯째, 수탁자의 재량권 유무에 따라 수탁자가 재량권을 가지는 신탁을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그렇지 않은 신탁을 확정신탁(Fixed Trust)이라고 한다.[17] 재량신탁의 경우 신탁법상 허용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권한도 줄 수 있다(신탁법 제3조 제4항).[18] 또한 신탁은 재산승계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9]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신탁의 유형을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인 상속신탁으로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유언신탁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먼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13) 신탁의 성립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법정신탁이라고 함(신탁법 제101조 제4항)

14) 이 신탁은 법무부 장관의 인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함(공익신탁법 제3조, 제25조)

15) 자익신탁은 위탁자 중심으로, 타익신탁은 수익자중심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한다는 견해로는 오영표(2020), p. 33 참조

16) 판례도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구분하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 관계 내지 법률 효과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대법원 2011. 5. 23. 자 2009마117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17) 오영걸(2023), p. 27, 각주 19

18) 이계정(2020), p. 89; 정순섭(2021), p. 66

19) 오영걸(2023), p. 20

자신이 사망할 때 신탁수익자가 될 자가 비로소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 또는 신탁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의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신탁을 말한다.

〈그림 Ⅱ-1〉 재산승계 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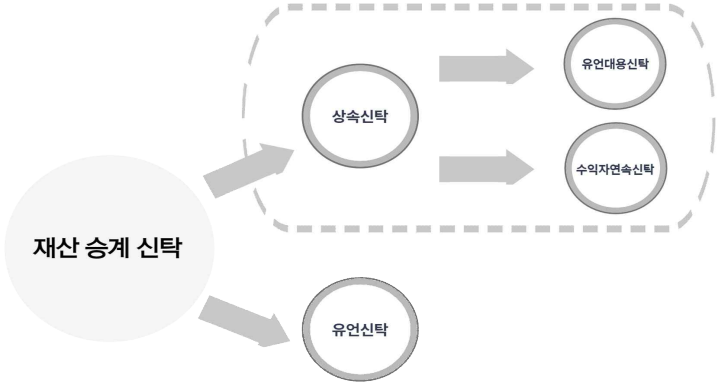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다음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하는 신탁으로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약을 말한다(신탁법 제60조 참조).

〈그림 Ⅱ-2〉 수익자연속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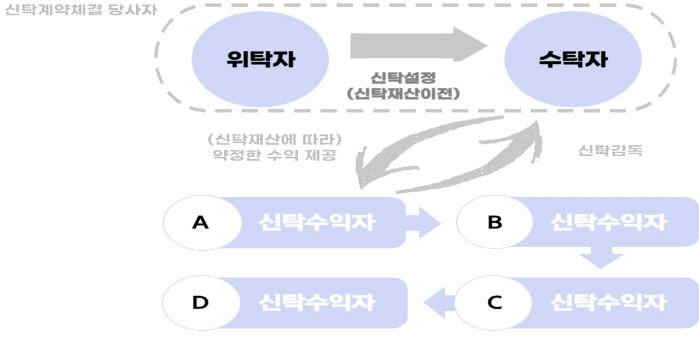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마지막으로, 유언신탁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유언으로써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신탁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 수탁자와 쌍방행위인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망한 후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해 설정되는 신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20]

〈그림 Ⅱ-3〉 유언대용신탁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라. 신탁시장 동향

1) 업권별 수탁고 현황

업권별 수탁고 현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1]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60개 신탁회사(겸영 46개, 전업 14개)의 총 수탁고는 1,378.1조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5.1% 증가한 67.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 46개사의 수탁고는 951.1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42.5조 원(+4.7%) 증가하였다. 업권별로는 은행 648.1조 원, 증권사 275.1조 원, 보험회사 27.9조 원으로 각각 전년말 대비 2.5% 증가한 16.1조 원, 8.8% 증가한 22.3조 원, 17.2% 증가한 4.1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 수탁고 기준 비중은 은행 47.0%, 부동산신탁회사 31.0%, 증권회사 20.0%, 보험회사 2.0% 순으로 나타났다.

20)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법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유언신탁의 수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는 양지훈(2024), p. 65 참고

2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3. 27.),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 [잠정]"

22) 전업신탁회사 14개사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는 427.0조 원으로 전년말 대비 24.9조 원(+6.2%) 증가하였음

〈표 Ⅱ-1〉 업권별 수탁고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23년 말 (A)	2024년 말 (B)	증감 (B-A)	증감률 (%)
겸영사	은행	632	648.1	16.1	2.5
	증권회사	252.8	278.1	25.3	8.8
	보험회사	23.8	27.9	4.1	17.2
소계		908.6	954.1	45.5	4.7
부동산신탁회사		402.1	424	21.9	5.4
합계		1,310.70	1,378.10	67.4	5.1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3. 27.),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 [잠정]"

2)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금전신탁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금전신탁은 632.8조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5.2% 증가한 31.2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퇴직연금이 38.2조 원 증가, 수시입출금이 16.9조 원 증가, 정기예금형이 2.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

다음으로 재산신탁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744.5조 원으로 2023년 말 대비 5.1% 증가한 36.2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부동산담보신탁은 29.0조 원이 증가하고, 금전채권신탁은 5.1조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재산신탁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24] 재산별 비중은 금전신탁 45.9%, 부동산 37.4%, 금전채권 16.0% 순으로 나타났다.

2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3. 27.),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 [잠정]"
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3. 27.),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 [잠정]"

〈표 Ⅱ-2〉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23년 말 수탁고	2024년 말 수탁고	2023년 말 대비 증감액	주요 증가 요인	증감률
금전신탁	601.6	632.8	31.2	퇴직연금 (+38.2조 원) 수시입출금 (+16.9조 원) 정기예금형 (+2.6조 원)	5.2
재산신탁	708.3	744.5	36.2	부동산담보신탁 (+29.0조 원) 금전채권신탁 (+5.1조 원)	5.1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3. 27.),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 [잠정]"

〈표 Ⅱ-3〉 금융권역 및 신탁재산별 수탁고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년 말	'21년 말	'22년 말	'23년 말	'24년 말
은행	금전신탁	불특정	16.5	16.0	15.1	14.3	13.5
		특정	255.4	278.5	322.6	357.7	374.3
		(퇴직연금)	139.1	159.7	184.5	207.4	229.5
		소계	271.9	294.6	337.8	372.1	387.8
	재산신탁	금전채권	168.9	143.9	142.6	182.4	180.9
		부동산신탁	51.1	54.3	60.6	71.6	77.1
		(담보신탁)	49.9	53.2	59.3	69.9	75.1
		(관리·처분신탁)	1.2	1.1	1.3	1.7	2.0
		유가증권 등	0.5	2.3	0.6	5.6	2.1
		소계	220.5	200.5	203.7	259.6	260.1
	기타	종합재산신탁 등	0.2	0.3	0.3	0.3	0.2
	은행신탁계		492.6	495.4	541.8	632.0	648.1
증권	금전신탁	불특정	0.1	0.1	0.1	0.1	0.1
		특정	223.5	276.6	236.5	210.5	222.4
		(퇴직연금)	33.8	42.9	56.1	64.5	77.1
		소계	223.6	276.7	236.6	210.6	222.5
	재산신탁	금전채권	22.7	29.6	27.2	32.3	38.3
		부동산신탁(관리·처분)	2.7	2.9	3.9	5.0	6.5
		유가증권 등	2.0	1.3	2.1	4.3	7.2
		소계	27.4	33.7	33.3	41.6	52.0
	기타	종합재산신탁 등	0.1	0.3	0.6	0.5	0.6
	증권신탁계		251.1	310.7	270.4	252.8	275.1
보험	금전신탁	특정	14.0	14.9	16.0	18.9	22.5
		(퇴직연금)	7.7	10.1	14.0	17.6	21.1
		소계	14.0	14.9	16.0	18.9	22.5
	재산신탁	부동산신탁 등	3.9	3.3	3.7	4.9	5.4
	보험신탁계		17.9	18.2	19.7	23.8	27.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 3. 27.),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 [잠정]"

3) 국내 신탁시장에 대한 평가

위의 자료를 근거로 살펴본 국내 신탁시장의 특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퇴직연금 수탁고가 38.2조 원 증가하여 전체 수탁고는 42.5조 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수탁고가 증가하여 국내 신탁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업권별 수탁고를 살펴보면 은행이 다른 업권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중의 수탁고를 보이고 있어 경쟁이 필요한 시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신탁시장은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에 한정되고 있어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5]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됨에 따라 향후에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수탁고의 비중이 현재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신탁대상인 사망보험금 규모는 총 905조 5,423억 원(2024년 12월 잔액 기준·금감원 자료)에 달한다. 특히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가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 5개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규모가 전체의 60%인 572조 2,734억 원이다.[26]

현재 보험회사가 신탁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탁고 기준 1.95%(27조 9,000억 원·2024년 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탁시장이 현재 규모 대비 최대 1.6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시장이 열림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탁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관련 규제 개선과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7]

---

25) 양희석(2024), p. 107

26) 이데일리 뉴스 기사(2025. 2. 14.), "종합재산신탁, '보험청구권 신탁'으로 1300배 시장 열려"

27) 이영경(2025), p. 15;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는 법규 개정 후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들은 앞다투어 보험금청구권신탁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2024년 11월 12일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일 당일 하나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각각 보험금청구권신탁 1호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보생명은 신탁 출시 2주 만에 100건(1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의의 및 구조

가. 생명보험계약과 계약에 따라 설정하는 신탁의 경제적 기능

생명보험과 신탁에 대해 각각 제도로서의 특징을 비교하면, 언뜻 보기에 둘은 전혀 다른 제도처럼 보이지만 생명보험이라도 예컨대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증감하는 변액보험이 있으며,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타입이 있고, 이러한 형태는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승계 기능 이외에도 고령자의 의사 능력 감소·상실 시 재산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생명보험은 주로 보험계약자의 재산승계이며 보험계약자의 재산관리적 기능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경제적 기능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이 보유한 재산의 창출 기능과 신탁이 보유한 재산의 관리, 보전기능 및 재산 교부·승계기능을 조합하여 보험금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나 보험금을 받을 가족 등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에서 보험금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해 상술한다.

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의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하는 신탁으로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이다.[28]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가 바로 수령하지 않고, 수탁자가 해당 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적절히 관리·투자하여 생긴 수익을 수익자가 신탁수익으로 받게 되는 구조이다.[29]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거액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관리 권한과 관리 방법을 놓고 관계자 간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는 이상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상속한 상속인이 만약 미성년

28) 한기정(2009), pp. 80~83;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1
29)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1

자, 고령자, 지적 장애인인 경우 큰 액수로 수령한 보험금의 관리에 소홀하여 이를 탕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급부를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고, 수탁자가 장래 신탁수익자를 위해서 보험금을 적절하게 관리·투자하여 정기적으로 신탁수익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용될 수 있다. 즉 자신보다 능력 있는 타인을 이용하여 재산관리 능력을 전환하는 방안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30]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 관리에 적합한 신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관리형 신탁[31]은 자본시장법상의 규율대상이다. 관리형 신탁이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된다(법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32]

요컨대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의 신탁의 분류에 따르면 재산승계신탁으로서 유언대용신탁에 해당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생전에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에게 남겨주고 싶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위탁자 자신을 생전수익자로 하여 지급받는 자익신탁, 위탁자가 사망한 시점부터는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타익신탁의 형태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수익권을 취득하지만 그 수익권의 행사는 오로지 위탁자가 사망할 때부터 가능하도록 정하는 타익신탁 형태로만 설정될 수도 있다.[33]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는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

30) 이재욱(2013), p. 5

31) 이중기(2025), p. 6

32) 자본시장법이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을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신탁업자가 운용·처분 권한을 보유하지 않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주로 신탁업자의 행위가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의 가치변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임(재정경제부(2006. 12.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p. 14; 조경준(2024), p. 155 각주 74번에서 재인용함)

33) 안성포(2021), p. 171

권신탁은 관리형 신탁상품으로 적극적 운용 요소가 없는, 즉 자산의 보관·관리만 요구하므로 증권의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34]

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구조

1) 보험금청구권 양도방식

이 유형은 위탁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보험청구권 양도방식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신탁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보험금청구권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35] 결국 이 방식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가능성이 먼저 명확히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먼저 부정설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보험의 선의성에 반하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 보험사기 양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부정한다.[36]

한편 통설과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은 정지조건부 권리로 보아 양도성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고, 그 조건부 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금청구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정지조건부 권리라는 전제에서 양도성을 인정하였다.[37]

생각건대 보험사고 발생 이전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추상적인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험계약에

34) 이중기(2025), p. 7
35)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 p. 622
36) 김성태(2001), p. 261
37)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기초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경제적 이용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 양도방식은 보험계약자 겸 위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전의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청구권 양도방식은 현행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에 적합하고 가능한 유형이다.[38]

〈그림 Ⅱ-4〉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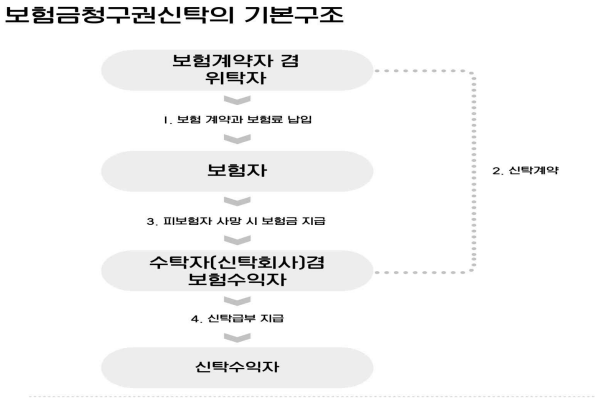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2) 보험수익자 지정·변경방식

보험수익자 지정·변경방식은 위탁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위탁자 본인 또는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유형이다.[39] 즉 이 유형은 우선 위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

38) 안성포(2021), p. 170;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보험금청구권양도형 생명보험신탁"은 현행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상 적합하고 가능한 유형이라고 보면서, 다만 "신탁법 제2조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여전히 유효한지만 문제가 된다고 함

39) 미국에서는 이러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함(53 A.L.R.2d 1112, §2; 양희석(2020), p. 540에서 재인용함)

재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형태이다(상법 제733조).[40]

보험수익자 지정·변경방식 유형은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적격성 문제와 함께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신탁법 제2조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신탁재산의 귀속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즉 이 유형은 구 신탁법상 신탁설정 방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으나,[41] 개정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 방법으로 신탁선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본다.[42]

라.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법제 현황

1) 신탁법상 신탁

현행 신탁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해당 법에는 사회의 발전과 거래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다.[43] 신탁의 목적을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신탁재산의 운용, 개발, 담보 그 밖의 목적을 위해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극재산도 신탁재산으로 포함시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신탁법 제2조).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어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선언 및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재신탁을 허용하였다(신탁법 제3조). 또한 수탁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주의의무(신탁법 제32조)와 충실의무(신탁법 제33조)를 규정하고, 공동수탁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신탁도 규정하였는데 수익자지정신탁(신탁법 제58조),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이 그에 해당한다.[44]

---

40) 한기정(2009), pp. 92~93
41) 한기정(2009), p. 93
42)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3
4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위한 공익신탁법이 2014. 3. 18. 제정되어 2015. 3. 19.부터 시행되고 있음
44) 그밖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는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9 참조

2)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규제

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지난 2009년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독립적인 신탁업법을 폐지[45]하고 신탁을 자본시장법상 여섯 개 투자업무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신탁을 규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여섯 개 투자업무 중 유일하게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하지 않는 신탁업무가 입법화되었다. 이것은 자본시장법에서 다루는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탁업을 병렬로 분류함으로써 신탁의 다양한 기능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46]

신탁업법의 폐지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문리해석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47]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보험급부를 이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은 채권계약이고 보험금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이다. 그리고 보통 보험급부는 금전이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여 보험급부의 내용이 금전일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 중 하나인 금전채권에 해당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48] 또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장시켜 놓은 것과 달리 감독법인 자본시장법에서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제기도 가능하다.[49]

---

45) 우리나라는 1961. 12. 30.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제정하여 이전의 일본 법령 의용제도에서 벗어났으며, 1962년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을 제정하여 신탁제도를 통한 회사 사채발행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담보부사채신탁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의 안정성을 위해 사채에 담보를 붙여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담보권을 설정해주고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임. 이후 2007. 8. 3. 자본시장법(2009. 2. 4. 시행)이 제정되어 신탁업법이 폐지되어 자본시장법에 흡수되었음

46) 김진영(2016), p. 10

47) 진익(2009), p. 9

48)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4; 권효상(2018), p. 268(금전채권으로 보는 이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 받는데, 그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할 지급준비금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은 금전으로 산정 가능하여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원칙은 상법 제638조가 "기타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타의 급여"도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훈(2017), p. 13; 안성포(2021), p. 170; 양희석(2020), p. 544; 오영표(2021), p. 79; 한기정(2009), p. 96

49) 김상훈(2017), p. 13; 양희석(2020), p. 543

생각건대 보험사고 발생 이전의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이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통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점, 금전채권이 반드시 확정적 권리일 필요는 없다는 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특별히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금청구권은 신탁 가능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다.[50]

이러한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보호를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제108조 참조) 주로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에 위임을 통해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51]

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규제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수탁자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즉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0만 원)[52] 이상이어야 하고,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은 불가하다. 이는 재해·질병사망 등의 경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

50) 생명보험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신탁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로 치환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신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로는 최준규(2018), p. 85 가 있음

51) 현재 신탁업은 자본시장법 내에서 금융투자업의 한 종류로 규율되고 있으나, 신탁이 가진 고유한 재산관리 및 승계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신탁법이 개정되어 신탁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신탁업을 규율하는 업법과의 관계설정에 관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 신탁의 본질과 자본시장법의 충돌, 규제 범위의 불일치, 다양한 신탁 유형 수용의 한계, 감독의 비효율성, 산업 발전이 저해되어 신탁상품 개발에 제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규율에 관한 비판적 견해로는 고동원 외(2017) p. 33; 안성포(2014), p. 105 참조; 일본과 달리 신탁이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타 금융투자상품들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수수료, 운용 방식 제한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신탁에 접근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국 소비자의 신탁 접근성을 증대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산 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에 한해서 별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지홍(2024), p. 7 참조

52)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의3(보험금청구권 수탁 기준) 참조

익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해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가목 참조).

또한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할 경우 신탁계약은 무효가 되고 신탁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53]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나목 참조).

3) 보험업법상 신탁업 겸영

보험업법 제11조는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제한하는 제한주의를 취하여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54] 지난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 보험회사 겸영업무에 신탁업이 추가되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탁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표에 있었다. 그리하여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 겸영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1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다만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7조).

4) 세법

소득세법은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신탁수익자에게 과세한다(법 제4조 제2항).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익자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신탁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55]이 있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을 포함

53)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양희석(2024), p. 113 참조
54) 이성남(2022), p. 235

한 모든 신탁에 과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재산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신탁제도와 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신탁이 활성화 됨에 따라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법역이다.[56]

〈표 Ⅱ-4〉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법제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법령/조문	특이사항/쟁점
신탁법상 신탁	• 신탁 목적 확대 (운용, 개발, 담보 등) • 소극재산 포함 • 신탁선언·재신탁 허용 • 수탁자 의무(선관주의, 충실의무) • 수익자지정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신설	신탁법 제2, 3조	신탁재산 범위 확대 및 수탁자 책임 강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규제	• 신탁업법 폐지, 자본시장법에 통합 • 신탁을 6대 투자업무 중 하나로 분류 • 보험금청구권은 문리상 신탁 불가 해석 존재 • 반대 견해: 보험금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신탁 가능	자본시장법 제103, 108조 시행령 제109조 제3항 10호	자본시장법상 재산 범위 제한이 신탁법의 취지와 충돌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규제	•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 이상만 수탁 가능 • 특약(재해·질병 사망)은 신탁 불가 •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인 요건 • 수익자 요건(배우자, 직계 존비속) • 보험대출 발생 시 신탁 무효	시행령 제109조 제3항 10호 가목·나목 금융투자업규정 제 4-92조의3	수탁요건 제한으로 실효성 논란 및 비판 있음
보험업법상 신탁업 겸영	• 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 허용 (2003년 개정) • 자산관리 활성화 목적 • 겸영 시 신고 및 승인 필요 • 회계상 자산·부채 구분 계리 의무	보험업법 제11조 시행령 제16, 17조	신탁 겸영은 허용되나 금융위 승인 필요
세법상 과세	• 수익자 실질과세 원칙 적용 •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포함 여부 관련 하급심 판결 존재 • 신탁재산 전반에 과세 확대 (2020년 이후) • 법인세 과세 방식 선택 가능	소득세법 제4조,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33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유언대용신탁 포함 전 신탁 전반에 대한 과세 체계 확립

55)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

56) 2020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임; 정순섭 (2021), p. 9

3. 소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자산으로 하는 신탁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신탁을 통한 보험금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 구조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보험계약자인 위탁자가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서 신탁금 지급방식을 사전에 지정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에 신탁계약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탁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관리·운용하면서 발생한 신탁급부를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정된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장애가 있는 자녀나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등에 자산관리 및 상속설계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보험금청구권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직된 규제의 문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관리형 신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신탁과 동일하게 획일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나아가 우리나라 신탁시장에서 금융기관별 수탁고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되었으나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되었으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에 제약이 된다거나 보험과 신탁이 결합하여 설정된 법률관계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 적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규제 개선 측면과 법제 정비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 개선과 법정 정비 측면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일찍이 보험금신탁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활성화 되어 있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해외의 보험금신탁제도

1. 미국

가. 생명보험신탁의 개요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이 창설된 것은 1800[57]년대이며 그 신탁의 역사는 약 200년으로 장기에 걸쳐 있다.[58] 생명보험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 형성이나 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의 주요 구성 요소로 존재해 왔다.

개인은 자신의 재산형성, 투자 또는 배우자, 다음 세대나 자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승계시킬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관계상 개인과 고용자와의 보상적 합의 하에 단체 정기보험(Group term insurance) 등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의 취득 또는 가입은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상속 계획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어떤 목적이든 최종적인 상속 계획의 목표는 생명보험을 통한 투자와 재산 이전에 관련된 연방 유산세(Estate tax),[59] 증여세(Gift tax) 및 세대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60]의 절세에 있다고 한다.[61]

---

57) 미국에서 최초로 신탁업무를 수행한 회사는 뉴욕의 파머스 인슈어런스(Farmer's Insurance and Loan Company(1822))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사망한 이후 수익자를 위해 보험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금융투자협회(2012), p. 43

58) John et al.(1979)

59) 유산세와 생명보험금의 관계에 관하여 ① 유언집행자(Executor)에 의해 사망보험금으로 수령되는 금액을 한도로 ② 피상속인(고인)(Decedent)의 사망 시점에 해당 피상속인이 단독(Alone) 또는 타인(Other person)과 함께(In conjunction with) 행사 가능한 부수적 권리(Incidents of ownership)를 가진 생명보험에 의해 다른 보험수익자 모두에 의해 사망보험금으로 수령되는 금액을 한도로 총유산(Gross estate)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IRC §2042) 생명보험금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유산세 과세상의 문제가 됨

60) 세대생략세법에서는 통상적인 신탁계약은 아니지만 실질상 신탁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계약 또는 협정(Arrangement)도 신탁(Trust)으로 취급되어 이에는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등이 포함됨(Treas. Reg.§25.2512-6(a).; Treas. Reg.§25.2503-3(c)Ex. 6.); 자신이 피보험자이며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의 수령이 IRC 2612(c)에 따른 바로 증여(Skip person)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보험증권의 소유자인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에 세대생략세가 부과됨

61) Georgiana J. Slade(2009); John A. Miller et al.(2021)

일반적으로 재산의 제공자인 자가 생명보험계약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의도하는 수익자에게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라 이전세를 절세할 수 있는 상속 계획은 사실상 어렵다. 예컨대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많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형식으로 완전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자로서 보험수익자인 1명 이상의 개인을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에 의한 합의와 보험금의 분배는 연방 유산세 및 주 이전세(IRC §2042(1))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속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여기서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1명 이상의 개인을 지명하거나, 생명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지명하는 대신 그 절세상의 이득은 생명보험신탁을 이용함으로써 신탁수탁자가 그 생명보험증권을 소유하는 상속 계획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이미 생명보험증권을 소유하는 자는 생전신탁(Living Trust)에 그 생명보험증권을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을 의도하는 사람은 새롭게 신탁을 설정해서 그 중에서, 수탁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어느 경우든 신탁재산은 생명보험증권이 되고, 그 신탁은 생명보험증권의 소유자 및 그로부터 보험금 또는 수익을 취득하는 수익자로 구성되게 된다. 신탁증서에는 생명보험증권에서 의도한 수익자 및 보험금과 관련된 수익자의 이익의 범위가 지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증권의 소유권을 신탁함으로써 연방 유산세와 주 이전세를 절세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62]

나. 생명보험신탁의 형식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 ② 철회불가능신탁(Irrevocable Trust), ③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이 그것이다.

신탁의 설정이란 재산을 신탁에 이전시키는 것이며 이는 재산 소유권 이전이기도 하다. 재산권 이전은 완전 이전과 불완전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 이전이란 재산 소유권을 신탁에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위탁자에 의한 지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전의 형태를 말한다.

62) Office of the probate court administrator state of connecticut(2016), p. 2

한편 불완전 이전이란 신탁 이전 후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신탁 제공자에 의한 지배의 영향을 받는 이전의 형태를 말한다. 완전 이전으로 재산 소유권을 신탁에 이전했을 경우,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소유권은 더 이상 위탁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그 시점에서 위탁자는 재산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1) 철회가능신탁

생명보험증권의 소유자 및 그 수익자가 설정되는 신탁의 형식 중 하나는 보험계약자가 평생에 걸쳐 그 신탁을 무효로 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그 신탁이 보험계약자의 생존 중에 설정된 것이다.

이는 철회가능신탁이라고 하고(UTC 제603조),[63] 여러 가지 유언 대체 방법 중 실질적으로 유언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다.[64]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재산을 유언과 마찬가지로 거의 포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65] 신탁 자체는 설정 시에 특정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생명보험을 비롯한 다른 유언 대체 방법에서도 수취인(Pay-on-Death account(POD) 조항의 승계인, Transfer-on-Death(TOD) 조항의 이전처 등)을 수탁자로 두면 이들 재산도 모두 신탁재산에 편입된다. 유언조차 유언에 따라 승계인을 지정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Pour-Over Will 조항(잔여재산은 모두 신탁에 편입한다는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넣도록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철회가능신탁을 원한다면, 신탁증서에는 보험계약자가 신탁을 무효로 하고,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66]

---

63) 원문은 이하와 같음
§603. Settlor's powers; powers of withdrawal
...
2. Rights of settlor of revocable trust. During the period the power may be exercised, the holder of a power of withdrawal has the rights of a settlor of a revocable trust under this section to the extent of the property subject to the power.

64) 石川優佳(2018), p. 101(樋口範雄, 神作裕之 편저, 「現代の信託法—アメリカと日本)

65) 미국에서 철회가능 생명보험신탁의 신탁재산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Fahrney v. Wilson 180 Cal. App. 2d 694(1960)(https://law.justia.com/cases/california/court-of-appeal/2d/180/694.html); 일부 주에서는 법률로 철회가능 생명보험증권의 신탁재산 적격을 명시하고 있음(N.Y. Est. Powers & Trusts Law § 13-3.3; Wis. Stat. Ann. § 701.07)

66) Austin W. Scott et al.(2021)

생존자 생명보험 신탁은 철회가능신탁 또는 철회불가능신탁 중 어느 쪽이든 또는 그 신탁이 생명보험증권 이외의 재산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도 생명보험증권의 소유자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철회불가능신탁

철회가능신탁에서는 신탁제공자인 보험계약자는 신탁을 무효로 하고, 변경하고, 수정하거나 또는 종료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신탁설정에 의한 재산 소유권 이전 후에도 그 재산 소유권을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철회가능신탁은 불완전한 재산 소유권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가능 생명보험신탁과는 대조적으로 철회불가능신탁에서는 위탁자인 보험계약자는 신탁을 무효로 하고, 변경하거나, 수정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에서는 위탁자의 재산 소유권은 완전히 신탁에 이전하기 때문에 신탁설정 후에는 위탁자에게 그러한 재산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67]

이와 같이 신탁의 설정에 있어서 철회가능신탁과 철회불가능신탁은 위탁자의 재산 소유권 귀속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에 따라 연방 유산세, 증여세 및 세대생략세도 그 취급이 달라지게 된다.[68]

3) 유언신탁

생명보험신탁의 세 번째 형식은 보험계약자의 유언 하에 신탁에 이전하는 보험계약자가 소유한 생명보험금이다. 유언 생명보험신탁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성립한다. 첫째, 생명보험증권의 수익자로서 보험계약자의 유산을 지정 또는 유언신탁으로 분배 가능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의 유언으로 지정하는 구조이다. 둘째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유언신탁수탁자를 지정하는 구조이다.[69]

유언신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자의 유언하에 생명보험신탁이 설정되므

---

67) Timothy e. Paterick(2024), p. 127

68) Adam abrahams(2013), p. 14

69) RBC Dominion Securities Inc(2016), p. 1

로, 신탁설정의 합의나 보험금의 분배가 용이하다.[70] 둘째,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유언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신탁설정의 합의나 보험금의 분배는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다. 셋째,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증권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종류를 유연하게 변경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차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넷째, 신탁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71]

다. 생명보험신탁을 설정하는 이유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개인은 생명보험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결정하게 된다. 개인이 생명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가족을 위한 소득의 주된 원천이 되는 개인은 그 개인의 사망으로 잃게 되는 소득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족에게 주기를 원한다.

둘째, 개인은 부채, 비용, 미지급된 세금, 사망 시 발생하는 연방 유산세, 주 유산세·주 상속세 등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싶어한다. 여기에는 장례 및 장례 비용, 개인의 마지막 요양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사망 시에 평가되는 스텝업 베이스(Step-up basis)로 누리지 않는 재산에 대한 장래의 자본 이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셋째, 개인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개인의 사업을 위한 자금 제공을 원하는 것이다.

넷째, 생명보험의 가입은 개인의 상속계획에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생명보험금은 개인 또는 자선단체에 대한 유증이나 기부를 위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산을 위한 보험계약의 유용성은 사망 시 발생하는 세금 또는 기존의 세금, 부채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대신에 보험계약자의 가족에 대해서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다섯째, 다른 재산과 비교했을 경우, 생명보험증권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방어를 제공한다. 일부 주(State)에서 생명보험증권에 관련된 현금가치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보

70) Editorial Board(1967). pp. 1118~1119

71) Editorial Board(1967), p. 1119

험계약자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금이 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그 후손 등의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많은 주에서는 그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의 유산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72]

여섯째, 생명보험은 소득세와 관련하여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가입하고자 한다.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라 함) §72 (e)(5) 보험계약가입에 따라 비과세로 취득한 수취배당금의 총액이 지급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까지는 수취배당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IRC §72조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의 금전적 가치(예: 해약환급금 등)에 의한 소득은 만약 그것이 분배 또는 차입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약환급금 등의 소득은 분배 또는 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에서 최초의 인출로 간주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은 세제 면에서 장점이 많고, 운용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어 보험금 수령도 비과세되므로 상속인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만 사망한 본인이 보험계약 보유자인 경우는 보험금은 본인의 유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철회불가능신탁을 통해 보험을 계약함으로써 보험금을 유산세 과세대상 외로 해서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재산을 최대화하는 경우가 많다.[73] 이하에서는 보험금신탁과 과세에 대해서 상술한다.

라. 보험신탁과 과세

미국에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생명보험 또는 신탁 등이 재산 이전의 계획으로 활용되고 있다.[74] 그중 보험금이 연방 유산세의 과세 대상 외가 되는 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ILIT)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

72) Miss. Code Ann. §83-7-7(2); N.Y. Ins. Law §3212(b)(1)

73) Adam abrahams(2014), p. 10

74) John A. Miller(2013); 1976년 구IRC 개정에 따른 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의 상속계획에 대해서는 Henry G. Will(1976) 참조

1) 철회가능신탁

위탁자 스스로가 재산을 생명보험신탁에 이전한 경우, 위탁자는 이하에 제시하는 행위가 연방증여세의 납세의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게 된다. 첫째, 신탁에 대한 생명보험증권의 이전, 둘째, 신탁에 대한 자금 제공, 예컨대 신탁이 이 자금을 이용해 신탁에 속한 생명보험증권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셋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용자 등의 보험계약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 의해 신탁에 속한 생명보험증권에 관련되는 보험료가 지불되는 경우 등의 세 가지이다. 생명보험증권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신탁 위탁자에 의해 철회가능신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은 불완전한 증여(Incomplete gift)로 간주되어 연방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탁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계없이, 위탁자가 재산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지 않고, 위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지배와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증여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75] 예컨대, 위탁자가 스스로 재산의 소유권을 복귀할 권한을 유보하고, 새로운 수익자를 지명하거나, 또는 수익권을 변경할 권한을 유보한다면, 그 증여는 불완전한 증여가 된다.[76] 따라서 위탁자가 생명보험증권을 신탁에 이전하거나 그 보험료 지불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신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신탁을 무효로 하고, 변경하고, 수정하고, 종료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그 이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완전한 증여가 되지 않는다.[77] 또한 위탁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유보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에 속한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경우의 증여도 불완전한 증여가 된다.[78] 이와 달리 위탁자의 사망 이외에 발생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무효로 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종료되거나 그 권한의 포기는 증여 완료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79]

철회가능신탁에서 위탁자가 신탁을 무효로 하고, 변경하고, 수정하거나, 또는 종료하는

---

75) Treas. Reg.§25.2511-2(b)

76) Treas. Reg.§25.2511-2(c)

77) Burnet v. Guggenheim, 288 U.S. 280(1933); Sanford Est. v. Comr., 308 U.S. 39(1939); Rasquin v. Humphreys, 308 U.S. 54(1939); Streck v. Comr., T.C.M.(1982)

78) Sanford Est. v. Comr., 308 U.S. 39(1939); Pleet v. Comr., 17 T.C. 77(1951)

79) Treas. Reg.§25.2511-2 (f); Sanford Est. v. Comr., 308 U. S. 3 (1939; Burnetv. Guggenheim, 288 U.S. 280(1933) ; Latta v. Comr.,212 F.2d 164(3d Cir. 1954), cert. denied, 348 U.S.825(1954); Camp v. Comr., 195 F.2d 999(1st Cir. 1952)

위탁자의 권한을 배제하도록 신탁을 수정하는 경우, 그 수정은 신탁을 무효로 하는 권한의 포기로 간주되어 완전한 증여가 된다. 증여를 불완전한 것으로 하고 있던 신탁에 대해 권한을 유보하지 않도록 신탁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그 수정은 완전한 증여가 된다.

불완전한 증여를 발생시키는 신탁으로 위탁자가 보유하는 권한을 포기하기 전에 불완전한 증여로부터 완전한 증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Streck 사건이 그 예이다.[80] 위탁자 이외의 제3자가 신탁재산을 제공하고, 위탁자가 신탁을 무효로 하는 권한을 유보했을 경우, 그 신탁에 대한 재산 제공은 그 제3자가 아니라 위탁자에 의한 수익자에 대한 증여로 취급된다(IRC §2511). 신탁설정 후, 위탁자가 그 신탁을 무효로 할 권한을 포기했을 경우, 위탁자는 그러한 제3자에 의해 제공된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한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철회불가능신탁

철회가능신탁의 재산 이전과는 달리, 철회불가능신탁의 재산 이전은 완전한 증여가 된다. 철회불가능신탁은 첫째, 위탁자가 새로운 신탁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 둘째, 수익자의 이익을 변경할 권한을 전혀 유보하지 않는다. 셋째, 불완전한 증여가 되는 다른 어떠한 권한도 유보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이 형태의 신탁에는 생명보험증권의 이전 및 보험에 관한 보험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불도 포함된다.[81] 그러므로 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을 설정했을 경우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위탁자에게 직접 발생하게 된다.

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하의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생명보험증권의 신탁재산 이전, 둘째, 신탁에 현금을 이전한 후의 수탁자에 의한 직접적인 보험료의 지불, 위탁자, 위탁자의 고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한 보험료의 지불 등이다.[82]

위탁자가 금전 또는 화폐가치에 있어서 적절하고 충분한 대가 미만으로 철회불가능 신탁

---

80) Streck v. Comr., 1982 T.C. Memo. 391

81) Treas. Reg.§25.2511-1(h)(8)

82) Baratta-Lorton Est. v. Comr., T.C.M. 1985-72, aff'd by unpub. opin., 787 F.2d 597 (9th Cir. 1986). 철회불가능신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산 제공은 완전한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됨.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위탁자 또는 단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고용자 등에 의한 직접적인 보험료의 지불에 대해서 증여세의 연간 과세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생명보험계약자인 위탁자가 철회 불가능신탁에 속한 생명보험증권에 대해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그 신탁에 제공하는 것은 과세상 중요한 요소가 됨

에 생명보험증권을 이전했을 경우, 그 위탁자가 실시한 이전은 IRC §2503(b)에 따라 연간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생명보험증권의 신탁 이전에 관해 미성년자 신탁(Minority Trust)을 이용함으로써 증여세의 연간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IRC §2503(c)).

IRC §2503(c)에 따라 미성년자 신탁에서는 신탁이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적으로 연간 과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 그 요건은 ① 수증자가 21세에 도달하기 전에 신탁재산의 전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수증자의 소유가 되거나 또는 수증자에 의해서만 소득이 소비되는 경우, ② 수증자가 21세에 도달할 때까지의 사이에 신탁재산을 인출할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경우,[83] ③ 수증자가 21세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신탁은 재산을 수증자의 유산에 지급되도록 하거나 또는 수증자는 일반지명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지명권은 수증자의 유언 또는 생존 중의 어느 쪽에서 행사 가능한 것으로 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84]

이와 같이 수증자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IRC §2503(c)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신탁에 대한 이전은 증여세의 연간 과세 면제를 보증한다. IRC §2503(c)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명보험증권의 생전신탁 이전도 동일하게 증여세의 연간 과세 면제 대상이 된다.[85]

요컨대 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의 위탁자는 증여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증여세의 연간 과세 면제(Gift Tax Annual Exclusion) 제도를 고려하게 된다.[86] 위탁자가 증여세의 연간 과세면제 범위에서 매년 신탁에 대해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탁자는 철회불가능신탁을 통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게 된다.

83) Rev. Rul. 74-43, 1974-1 C.B. 285(https://www.taxnotes.com/research/federal/irs-guidance/revenue-rulings/rev-rul-74-43/db62)

84) Treas. Reg.§25.2503-4(b)

85) Duncan v. U.S., 368 F.2d 98 (5th Cir. 1966); Illinois Nat'l Bank of Springfield v. U.S., 756 F. Supp. 1117 (C.D. Ill. 1991)

86) 미국 IRC에 따라 현재 증여에 대해 연간 10,000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함. 이 과세 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됨(§2503(b)(1) 참조)

〈표 Ⅲ-1〉 미국 보험신탁 정리

구분	철회가능신탁 (Revocable Trust)	철회불가능신탁 (Irrevocable Trust)	유언신탁 (Testamentary Trust)
설정 시기	생전	생전	사망 후 유언에 따라
변경 가능성	가능	불가능	유언 변경 가능
세무상 증여 여부	불완전한 증여 (과세 대상 아님)	완전한 증여 (증여세 과세 대상)	불완전한 증여로 분류됨
유산세 포함 여부	포함 가능성 있음	제외 가능(조건충족 시)	포함 가능성 있음

2. 영국

가. 생명보험신탁의 개요

일반적으로 영국법상의 신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 정의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정하는 신탁, 즉 사익신탁(Private Trusts)에 관한 것으로, 이른바 공익신탁(Charitable Trust 또는 Public Trust)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87] 신탁은 어느 일정한 자(수탁자)가 1인 또는 복수의 수익자(수익자 중 1인이 수탁자 자신이어도 좋음)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신탁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해당 수탁자를 구속하는 형평법상의 의무이다. 해당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권한은 모든 수익자가 가지고 있다.

신탁은 수탁자가 일정한 재산(신탁재산)을 다른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신탁을 이용한 경우, 수탁자는 외견상 신탁재산의 소유자(Owner)이지만, 그 소유권은 완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일정한 형평법상의 의무(Equitable obligations)를 부담하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를 수탁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형평법상의 의무'에는 이른바 충실의무(Fiduciary obligations)와[88]

87) A trust is an equitable obligation, binding a person (called a trustee) to deal with property over which he has control (which is called the trust property) for the benefit of persons (who are called beneficiaries or cestuis que trust) of whom he may himself be one, and any one of whom may enforce the obligation(Underhill, A and Hayton, D, Law of Trusts and Trustees; (16th ed., Butterworths, 2002.)

선관주의의무[89](Equitable duty to take reasonable care)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 신탁 전반에 대한 규제는 「수탁자법(Trustee Act 2000)」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해당 법률은 우리나라의 「신탁법」과 그 역할이 유사하다.

신탁업자의 행위규제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하 'FSMA'라 함)」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해당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신탁업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과 유사하다. 이러한 신탁업자에 대하여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감독을 실시한다.[90]

나. 생명보험신탁의 유형

신탁은 그 설정 방법, 목적, 특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것은 설정자가 임의의 의사에 따라 특정 개인(또는 그룹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사익 목적의 명시 신탁이다. 이 신탁의 설정 방법에는 설정자가 특정한 재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한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방법 및 자신이 수탁자가 되어 해당 재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한다는 취지를 선언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91] 영국의 보험금청구권신탁 종류는 수탁자에 대해 복수의 수익자 간 재산의 분배 비율, 수익자에 대한 재산 분배 방법, 분배 시기, 전 재산을 분배 대상으로 할지 여부 등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92] 위탁자가 주요 신탁수익자와 보조 수익자를 지정하고 수탁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신탁(Flexible Trust)이 있다. 나아가 위탁자가 지정한 신탁수익자를 포함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없는 철회불가능신탁(Absolute Trust), 부부 중 한사

88) 충실의무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하는 성실의무로 이에 근거하여 수탁자는 그 수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Westdentche Landesbank v Islington LBC[1996]AC 669.)

89) 선관주의의무는 신탁된 재산을 1인 또는 복수의 수익자를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형평법상의 의무임(Speight v Gaunt(1883)9 App Cas 1、Learoyd v Whiteley(1887)12 App Cas 727.)

90) 양지훈(2024), p. 122

91) Graham Moffat(2005), pp. 112~130

92) 재량신탁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의 전부를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소모적 신탁(Exhaustive Trust)과 수익의 어느 정도를 분배할지도 수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비소모적 신탁(Non Exhaustive Trust)의 두 종류가 있다. 재량신탁의 경우 분배 전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특정의 수익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대책에 잘 이용됨(McDonald·Street(2014), p. 147)

람이 사망한 경우 남은 사람이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 생존자재량신탁(Survivor's Discretionary Trust) 등이 있다.[93]

영국에서는 연금신탁[94]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로 세무상의 목적으로 생명보험증권에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유족은 이 신탁을 통해 유산 상속을 위한 검인[95]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일반 경비'로서 상속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96] 2006년 세제 개정 때까지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인 유산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후에는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재량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을 취하면 통상적인 상속세 과세보다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보험신탁은 여전히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97] 이러한 보험신탁은 보험회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표준서식을 이용해 설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93) L&G 홈페이지

94) 연금수급자가 연금환급금을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미리 연금신탁해 두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수급자가 연금 적격연령에 미달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된 가족은 채권자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환급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됨. 재량신탁의 방법에 의한 연금기금의 자산은 그 운용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으로도 유리한 취급을 받음(Incorporation and Income Taxes Act 1988, s.686(2)(c)). 또한 이 신탁에 의해 상속세법상의 장점를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음(Inheritance Tax Act 1984, s.12)

95) 유언의 유효성을 다툰 이후에 유언집행을 행하는 일련의 소송절차를 말함

96) Inheritance Tax Act 1984, s.21(2)

97) 생명보험을 신탁으로 작성할 때의 장점은 신탁을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점임. 가장 큰 장점은 세금과 관련된 것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법적 재산의 일부가 되므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 영국의 상속세 한도는 £325,000인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유산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그러나 생명보험을 신탁으로 작성하면 보험수익금이 법적 재산이 아닌 신탁에 직접 지급되고 수익자에게 분배되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음(금융 상담사가 작성한 보험신탁에 관한 인터넷 안내자료 참조; https://www.christopher-little.co.uk/wp-content/uploads/2013/07/Guide-to-writing-your-life-insurance-policy-under-trust1.pdf)

〈표 Ⅲ-2〉 영국 보험신탁 정리

구분	내용
신탁 개념	수탁자가 일정 재산(신탁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며, 이에 대해 형평법상 의무(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를 부담
관련 법령	① 신탁 일반 규제: Trustee Act 2000 ② 신탁업자 행위 규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 ③ 감독기관: 금융행위감독청(FCA)
신탁의 일반 유형	• 명시 신탁 (Express Trust): 설정자가 명시적으로 특정 개인을 위해 설정 • 자가신탁(Self-declared trust): 설정자가 수탁자 역할도 수행
생명보험신탁 유형	① 재량신탁 (Discretionary Trust) • 수익자, 분배비율, 분배 시기 등 수탁자 재량 • 과세 회피에 유리 • 분배방식에 따라 소모적·비소모적 구분 ② 유연신탁 (Flexible Trust) • 주요·보조 수익자 구분, 수탁자가 분배 조정 가능 ③ 철회불가능신탁 (Absolute Trust) • 설정 후 변경 불가 ④ 생존자 재량신탁 (Survivor's Discretionary Trust) • 부부 중 생존자에게 재량권 부여
연금신탁	• 사망 시 유족이 직접 수령 가능 • 재량신탁 방식 이용 시 세금상 이점 있음
세제 혜택	• 상속세 회피 목적 활용 가능 - 신탁을 통한 보험금은 유산으로 간주 되지 않아 상속세 계산 대상 제외 - 단, 2006년 세제 개정 이후 일정 한도 초과분에는 과세 • 신속한 보험금 수령 가능 (유언 검인절차 불필요)
설정 방식	보험회사의 표준서식 활용이 일반적

〈표 Ⅲ-3〉 미국·영국 보험신탁 정리

구분	미국	영국
신탁의 개념	위험회피 또는 상속계획 목적으로 설정된 생명보험신탁(ILIT)이 일반적 수탁자가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수익자에게 이익배분	수탁자가 일정 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며 형평법상 의무를 부담
관련 법령	신탁법(Uniform Trust Code), IRC § 2042 등	Trustee Act 2000, FSMA 2000, Inheritance Tax Act 1984 등
감독기관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기관은 없으며 주법 적용, 주 법원 및 세무당국 관여	금융감독청(FCA)
주요 신탁 유형	ILIT(철회불가능 생명보험신탁)	Discretionary Trust, Flexible Trust, Absolute Trust, Survivor's Trust 등

〈표 Ⅲ-3〉 계속

구분	미국	영국
생명보험신탁 활용목적	유산세 회피, 증여세 절감, 피보험자 생전 사전설정에 따른 유족 보호	상속세 회피, 유언 검인절차 생략, 보험금 신속 수령
세제 혜택	ILIT을 활용할 경우, 보험금이 유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 아님	신탁설정 시 보험금은 유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됨
보험금 수령 방식	신탁을 통해 보험회사가 아닌 수탁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익자에게 분배	수익자는 검인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험금 수령 가능
설정 방식	신탁변호사(Estate planning attorney) 또는 보험설계사 또는 금융설계사(Insurance Planner, Financial Planner)[98]를 통해 설정, 서면 신탁계약서 필요	보험회사의 표준서식 활용 또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작성

3. 일본

가. 신탁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1) 신탁법과 신탁업법의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99]

일본의 개정 전 신탁법(이하 '구 신탁법'이라 함)은 사법이면서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색채가 매우 강하면서도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었다.[100] 특히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충실의무, 분리관리의무, 자기집행의무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또한 구 신탁법은 모국인 영국의 가족신탁 법리를 참고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각각 1명 또는 소수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신탁은행 등이 수탁하는 수익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신탁에 대응하는 규율과는 정합성이 떨어지게 되었다.[101]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환경의 변화나 신탁 실무의 요구에 따라 신탁법의 변화

98)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인 Aflac 홈페이지의 생명보험신탁에 관한 설명 참조(https://www.aflac.com/resources/life-insurance/life-insurance-trust-ilit.aspx)

99) 이하의 내용은 저자의 선행연구인 지광운(2023), p. 77~84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100) 道垣内弘人(2017), pp. 11~12

101) 道垣内弘人(2017), p. 14

가 요구되었다. 이에 신탁법을 개정하기에 이르고 개정된 신탁법(이하 '신탁법'이라 함)이 법안으로서 제출될 때에는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신탁법제에 대하여 수탁자의 의무, 수익자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 외에 신탁의 병합 및 분할,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신탁, 수익증권 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였다. 법 개정의 핵심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둘째, 수익자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셋째, 새로운 신탁제도의 도입이다.[102)]

특히 신탁법에서는 향후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탁의 이용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선,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탁의 형태를 재편할 수 있도록 신탁의 병합 및 분할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신탁으로서 자기 신탁(종래 신탁 선언), 담보권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 발행 유한책임신탁, 수익자 정함이 없는 신탁(종래 목적 신탁),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 신탁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신탁법 개정 외에도 신탁업법의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정 후 동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사채가 적극적으로 발행되었으나, 신탁이라는 이름을 남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탁회사의 다수는 고리의 금융업자이거나 신용이 약해 파산의 위험이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제를 위해 1922년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동시에 제정하였다.[103)]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금융기관의 정리통합이 진행됨과 동시에 국민저축을 증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기관 중 가장 발전된 보통은행이 저축업무와 신탁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신탁 업무 겸영에 관한 법률(이하 '겸영법'이라 함)을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하였다. 그 밖의 특별법으로는 1951년에 제정된 증권투자신탁법 및 1952년에 제정된 대부신탁법이 있다.[104)] 이 대부신탁법이 제정되면서 금전신탁이 정형화되었다고 한다.[105)]

신탁법의 특별법으로서 신탁업법은 2004년 현대화를 도모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102) 道垣内弘人(2017), p. 16
103) 道垣内弘人(2017), pp. 11~12
104) 道垣内弘人(2017), pp. 2~3
105) 新井誠(2011), p. 33

다는 입법취지로 전면개정 되었다. 일본 신탁업법도 현행 우리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그 후 전면개정된 신탁업법은 수탁가능 재산을 6가지로 한정하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그리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가능 재산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어 수탁가능 재산의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신탁설정 시 수탁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일본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신탁행위의 목적이 되는 신탁재산을 '재산'이라고 규정함에 따른 결과이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금전으로의 환산가능성, 이전 내지 처분가능성, 현존·특정성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면 무엇이든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106][107]

또한 2004년 개정 신탁업법은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금융기관 외로 확대했다.[108] 이와 같이 금융기관 이외의 신탁회사의 영위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일본법상 보험회사는 겸영법상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신탁업법 제67조에 따라 등록하고 신탁계약대리점을 영위하여야 했다.[109]

2) 보험업법상 신탁업 겸영 허용

2009년 일본은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99조 제3항[110]에 생명보험회사가 겸영업무로써 "그 지급하는 보험금에 관해 신탁 인수를 행하는 업무" 즉, 보험금 신탁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였다. 즉, 생명보험회사는 고유업무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신탁업법[111]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

106) 新井誠(2011), pp. 364~368

107) 신탁의 정의에 대해서 일본 신탁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 법률에서 신탁이란 다음 조 각 호에 열거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특정인이 일정한 목적(단순히 그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제외)에 따라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및 기타 해당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이 정의 규정에 따르면 신탁이란 ① 신탁계약, ② 유언, ③ 공정증서 등에 의해 하는 의사표시 중 하나의 방법(신탁행위)에 의해 특정인(수탁자)이 재산(신탁재산)을 일정한 목적(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 및 기타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108) 道垣内弘人(2017), p. 2

109) 양희석(2020), p. 538

110) 원문은 이하와 같음. "第九十九条 3 生命保険会社は、第九十七条及び前条の規定により行う業務のほか、第九十七条の業務の遂行を妨げない限度において、信託業法 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支払う保険金について、信託の引受けを行う業務 (以下「保険金信託業務」という.)を行うことができる."(생명보험회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업무 외에 제97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신탁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보험금에 관하여 신탁 인수를 행하는 업무(이하 '보험금 신탁업무'라 함)를 행할 수 있다.)

111) 일본은 원칙적으로 각 업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1개의 면허만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가 신탁을 판매하기 위

하고, 보험금신탁의 인수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제99조 제3항). 생명보험회사는 약관에 기초해서 보험금의 분할지급과 거치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해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단 지급된 보험금의 신탁을 통해 관리·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112] 즉 보험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신탁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신탁의 인수를 본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신탁대리점 형태로 생명보험신탁을 판매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신탁업무를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정해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99조 제7항). 인가 후에 업무의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도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제99조 제7항). 인가 신청 시에는 인가신청서에 이유서,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보험업법시행규칙 제243조). 보험금신탁업무에 대해서는 신탁업법 및 금융기관의 신탁업무의 겸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준용된다(제99조 제8항).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생명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로 본다(제99조 제10항).[113]

요컨대 2004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한정적 열거조항에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규정하지 않아 동 청구권의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신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보험업법 제99조 제3항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되게 되었다.

해서는 신탁회사와 제휴하여 신탁대리점 형태로 판매할 수 있음. 신탁업법 제67조에 따르면 신탁계약 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에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점 등록부에 등록해야 함

112) 安居孝啓(2010), p. 294

113) 이외에 벌칙규정도 마련되어 있음. 예컨대 생명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보험금신탁계약의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를 신탁회사로 간주하여 신탁업법 제2조 제8항 제5장 및 동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이 적용됨(제2조 제9항). 또한, 보험금신탁업무에 관해 준용되는 신탁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 법에 정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이 부과됨(일본 보험업법 제316조의 2 등). 나아가 생명보험회사의 이사 등이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등에는 10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함(일본 보험업법 제334조)

나. 일본의 생명보험신탁과 구조

1) 생명보험신탁

생명보험신탁이란 신탁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생명보험보험금 수령인이 되어 만일의 경우에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생전에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자인 친족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보험금신탁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수취인을 위탁자로 하고, 생명보험회사를 수탁자로 해서 해당 생명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보험금을 신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114)]

일본에서는 생명보험신탁을 장애가 있는 자녀나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등에 자산관리 및 상속설계의 일환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사망 이후 유족의 안정적 생활이나 미성년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생명보험신탁을 활용한다.[115)] 이러한 유형의 신탁은 생명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한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위탁자, 신탁은행을 수탁자, 그리고 위탁자가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자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116)]에 해당한다.[117)]

또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겨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본인이 사망 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활용하고 있다.[118)]

2) 구조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신탁은행과

114) 安居孝啓(2010), p. 294

115) 生命保険信託 個人のための信託 信託商品／活用方法 信託協会

116) 이는 수익자를 누구로 정하는지에 따른 신탁의 구별로 위탁자 스스로가 수익자가 되면 자익신탁이라 하고, 위탁자 이외의 사람이 수익자가 되면 타익신탁이라고 함

117) 안성포(2021), p. 174; 矢野 慎治郎(2019), p. 167

118) 박정희(2020), p. 20

신탁계약을 체결(신탁법 제4조 제1항)하여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수탁자인 신탁은행에 신탁 양도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로서 생명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수탁자인 신탁은행으로 변경한다.[119] 이때,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기간 중에는 보험계약자인 위탁자가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신탁은행인 수탁자 이외의 사람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생명보험신탁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본다.[120][121]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위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신탁은행(수탁자)은 유족에 대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생명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다. 그리고 신탁은행(수탁자)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망보험금을 금전신탁으로 보관한다. 신탁은행(수탁자)은 위의 금전신탁을 원본으로 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미리 지정된 기간·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122] 또한 생명보험신탁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탁회사나 신탁은행 등이 관리하는 재산의 일부 지불이나 지급 조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지시권자를 미리 선정할 수도 있다.[123]

신탁계약의 종료 시에 남은 신탁재산 즉 잔여재산은 일반적인 소유권 재산과 동일하게 되므로 미리 정해둔 잔여재산의 귀속 권리자가 있으면 남은 재산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때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 권리자를 제2수익자, 제3수익자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124]

요컨대 일본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보험금 수령 전 금전채권의 신탁, 보험계약자 사망 후 수령 사망보험금을 금전신탁으로 운용하여 제2수익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구조를 취한다.[125]

---

119) 이지연(2022), p. 42

120) 이지연(2022), p. 42

121) 矢野 慎治郎(2019), p. 167

122) 矢野 慎治郎(2019), p. 168

123) 이지연(2022), p. 42

124) 矢野 慎治郎(2019), p. 167

125) 생명보험신탁은 1924년 미츠이신탁회사가 업무를 인수받아 시작되었으며, 오래되면서도 새로운 신탁임(田中和明(2025), p. 130)

〈그림 Ⅲ-1〉 일본 생명보험 신탁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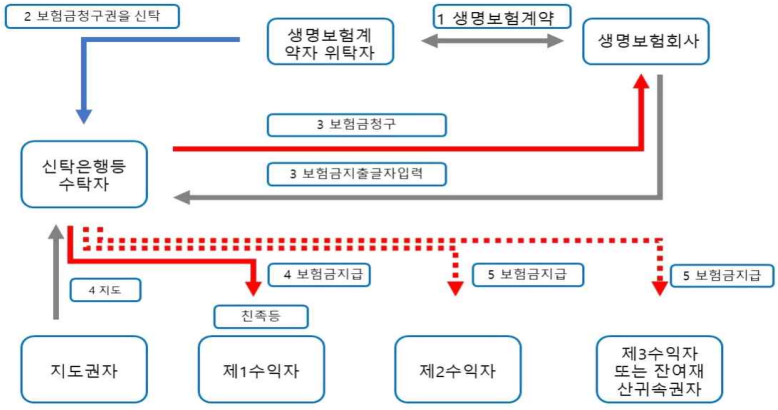

자료: 일본 신탁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

3) 판매 현황[126]

현재 일본 국내에서 생명보험신탁을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새롭게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127] 구조는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며, 위탁자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탁을 하고 있다. 발생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의 수 등 세세한 부분도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이하에서는 4개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생명보험신탁의 내용을 회사별로 살펴본다.

일본의 다이이치 생명보험주식회사(제일생명)는 신탁계약 대리점으로서 미즈호 신탁은행의 생명보험신탁을 취급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 수취인을 신탁 수탁자가 되는 미즈호 은행으로 변경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는 구조이다. 수익자는 제1수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제2수익자까지 지명이 가능하다. 받은 보험금으로 일반형 또는 5년 이상의 금전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정하지 않는 경우는 신탁보수를 지불하게 된다.

소니 생명은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 은행을 소속 신탁 은행으로 하고 생명보험신탁의 중개를 하고 있다.[128]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신탁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어 도

126) 일본 신탁시장 규모는 약 1,600조 엔이며, 주로 법인·기관투자자의 자금 운용·관리 중심임; 박지홍(2024), p. 5
127) 이지연(2022), p. 44
128)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인터넷 안내자료

쿄,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생명보험은 대상이 되지 않고, 동 지역의 지사에 소속하고 있는 라이프 플래너[129]를 통해서 가입한 보험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130]

프루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일본에서 최초로 공동으로 개발한 생명보험신탁을 통해 보험금을 전달하는 순서나 보험금의 분할 지급을 지정할 수 있다.[131] 다른 생명보험회사는 은행 등 타사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프루덴셜 생명은 자회사인 프루덴셜 신탁의 계약 대리점으로서 계약의 중개를 담당하고 있다.[132]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정된 생명보험의 가입자만 생명보험신탁의 계약을 맺는 대상이 된다.[133]

지브롤타(Gibraltar) 생명보험 주식회사도 세계에서 금융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는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그룹 계열사로 프루덴셜 신탁의 신탁대리점이다.[134] 생명보험신탁의 이용은 라이프 플랜 컨설턴트가 담당하는 자사의 상품만이 대상으로, 가입 중인 생명보험에 신탁계약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익자의 지정은 제3수익자까지 할 수 있고, 지정한 기한 또는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나 신탁재산이 소멸될 때까지 계약은 유지된다.[135]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신탁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신탁회사와 제휴해 보험금청구권신탁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수익에 비해 신탁운영에 따른 비용이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직접 생명보험신탁을 운영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36]

---

129) 소니생명의 라이프 플래너는 생명보험신탁계약, 유언신탁계약, 유산정리업무 위임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음 (https://www.sonylife.co.jp/land/shintaku/)

130) 生命保険信託とは？加入メリットのある人や注意すべきことについて解説(https://www.yasiro.co.jp/eitaikuyo/media/archives/9937)

131) 生命保険信託

132) 生命保険信託

133) 生命保険信託とは？加入メリットのある人や注意すべきことについて解説(https://www.yasiro.co.jp/eitaikuyo/media/archives/9937)

134) ジブラルタ生命保険株式会社(2021. 9. 21.), “~ お客さまへの想いをより確かなものに~「生命保険信託」の取扱いを開始”

135) 生命保険信託とは？加入メリットのある人や注意すべきことについて解説(https://www.yasiro.co.jp/eitaikuyo/media/archives/9937)

136) 양희석(2020), p. 538

다. 보험신탁과 과세

일본 상속세법상 원칙적으로 신탁의 설정에 의해 위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재산권의 증여가 의제된다는 개념에 근거하여 과세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둘째, 신탁의 수익자 등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 셋째, 그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되는 자는 그 신탁에 관한 권리를 그 신탁의 위탁자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일본상속세법 제9조의2 제1항). 또한 타익신탁의 설정은 그 원인관계로서 통상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 설정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상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도록 상속세법상, 신탁(수익권)에 관한 과세시기의 원칙은 신탁설정 시가 된다.

나아가 신탁에 관한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첫째, 신탁된 재산에 착안하여 당해신탁재산전체의 이전에 따른 신탁재산전체의 소유자를 단독 또는 복수의 동일한 권리를 갖는 자로 결정하는 과세방식 예컨대 '원금전부이전형 과세'라고 하고, 수익자연속형신탁 규정(상속세법 제9조의3), 둘째, 신탁재산의 과세 기초로 하면서 권리내용의 복층화 사실을 반영하여 복수의 관계자가 원본에 대해 갖는 질이 다른 이익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는 과세 방법 예컨대 '재산이익이전형 과세'라고 하고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의 규정(소득세법 제1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등), 신탁의 변경(상속세법 제9조의2 제5항(특정위탁자) 셋째, 신탁원본없이 신탁수익권을 파악하는 과세방식(예: '수익권대상형 과세')이라고 하고 법인세법 제4조의6)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다만 상속세법 기본통달상 특정 신탁이 생명보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탁의 설정에 따라 예컨대 첫째, 신탁재산이 되는 특정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되고, 둘째, 신탁재산인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해당 신탁의 설정에 따라 수익자에 관하여 신탁설정 시 아무런 과세관계가 생기지 않게 된다. 즉, 생명보험신탁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계약의 수취인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계약 시에 아무런 과세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신탁의 관계자인 위탁자 등이 선택한 법형식이 보험과는 다른 신탁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상 동일한 과세관계가 되는 이유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137)]

이 점에 관하여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상속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명

137) 野一色 直人(2015), p. 109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간주증여재산'(상속세법 제5조)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이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간주상속재산'으로 여겨지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둘째, 상속인 그 외의 자가 셋째,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과세시기는 생명보험금 취득 시, 즉 피보험자의 사망 등의 보험사고 발생 시이다(상속세법 제3조 등). 다시 말해, 현행 상속세법 규정의 내용을 개관하면 법적 성질이 다른 생명보험신탁과 생명보험계약에 대해 동일한 과세관계라는 결론은 바로 도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138]

생명보험신탁의 수익자가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 예컨대 보험계약기간 중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라고 해도, 실제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불이 있을 때까지는 그 권리의 내용은 일종의 기대권이라고[139]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면 생명보험신탁과 관련된 상속세법상의 과세관계를 검토할 경우 생명보험신탁에서 수익자(수익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설정 시에 가령 기대권인 생명보험금청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금전 등의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계약 및 생명보험신탁 양자의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동일한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140] 다만 생명보험계약과 신탁의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또한 생명보험신탁에서 수탁자의 역할은 생명보험계약과 다른 기능을 생명보험신탁이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생명보험계약과 생명보험신탁의 과세관계가 항상 동일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41] 예컨대 신탁재산이 주로 생명보험계약(생명보험청구권)인 특정 신탁에 관하여 신탁설정 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나고야 고판 2013년 4월 3일 (이하 '나고야 고판'이라 함)에서 상속세법 기본통달상 생명보험신탁에 대해 첫째, 신탁계약상 수탁자에게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을 것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생명보험계약에 한정되어 있을 것(운용방법과 관련된 수탁자의 재량이 존재하지 않을 것), 둘째, 위탁자의 지시에 근거하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것(위탁자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명확한 지시의 존재), 셋째, 위탁자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가 금지되어 있을 것(생

138) 野一色 直人(2015), p. 109
139) 山口昇(2011), pp. 1186~1187
140) 野一色 直人(2015), p. 109
141) 野一色 直人(2015), p. 110

명보험계약의 계속성)을 요건으로 하였다. 또한 나고야 고판에서 결론적으로 신탁설정 시 과세가 타당하고 생명보험과 동일한 과세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나고야 고판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현행 상속세법상 생명보험신탁의 취급에 있어 신탁인 생명보험신탁에 대해 즉시 생명보험과 관련된 과세관계를 적용한다는 근거 등을 찾기 어렵다는 점, 또는 기본통달상 생명보험신탁과 다른 신탁이 어떠한 이유에 근거해 다르게 취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표 Ⅲ-4〉 일본 보험신탁 정리

구분	내용
신탁법 및 신탁업법 개정	• 수탁자 의무·수익자 권리 명확화 • 다양한 신탁제도 도입(자기신탁, 목적신탁 등) • 수탁 가능 재산 제한 삭제 → 광범위한 재산 신탁 가능
보험업법 개정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신탁업무 겸영 허용(보험업법 제99조) • 별도 신탁 면허 없이 보험금 신탁 가능 • 내각총리대신 인가 필요, 보험회사는 신탁회사로 간주
신탁 구조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수탁자(신탁은행)와 신탁계약 체결 • 보험금 수령인을 신탁은행으로 지정 • 사망 후 신탁은행이 보험금을 수령, 수익자에게 정기 지급
판매 현황	• 제일생명, 소니생명, 프루덴셜 생명, 지브롤타 생명등 일부 생명보험회사만 취급 • 대부분 신탁회사와 제휴한 대리점 형태 • 수수료·수익자 수 등 회사별 상이
과세	• 신탁설정 시 증여세 과세 가능(상속세법 제9조의2) • 기대권 성격의 보험금청구권은 과세제외 • 신탁의 구조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 달라짐(나고야 고판 참조)

4. 소결

신탁은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오랜 전통을 거쳐 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신탁은 교육부터 주택 구입, 혼인부터 노후설계 등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142)]

142) 新井 誠(2023), p. 43

미국에서는 가족을 위해 신탁이 이용되는 경우의 다수가 생명보험신탁이다. 이러한 보험은 보험회사에 신탁되고, 신탁설정자가 사망 시 보험금이 직접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장시간의 검인(Probate)절차[143]와 과세를 절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144]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보험금신탁이 발전되어 왔다. 양국의 공통점은 신탁제도 자체가 상속계획과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국의 생명보험신탁 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규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양국에서는 신탁재산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신탁제도 자체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상쇄시키지 않고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초고령사회에서 재산관리제도로서 활발히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본은 1970년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그 대응 방안으로 고령자의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에 관한 법적 지원체계를 정비·구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종합자산관리상품으로 신탁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관련 신탁법과 신탁업법 등을 전면 개정하여 상당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일본에서 생명보험신탁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족뿐만 아니라 제3의 인물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설정도 가능하다. 예컨대, 보험금 수령인이 지정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 등이 있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들이 일시에 받는 거액의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생명보험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보험금의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게 금전의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145]

일본의 경우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6가지로 제한하는 입법을 폐지하였고, 이를 통해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신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법적인 제약이 없이 생명

143) 미국에서 검인절차에는 비용이 발생함.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유언 검인의 유산총액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주법에 규정되어 있음(California Probate, Article 2, Code 10810.)

144) 新井 誠(2023), p. 18

145) 이지연(2022), p. 44

보험신탁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신탁회사(수탁자)로 변경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일본 보험법 제43조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146)]

생명보험신탁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많지는 않으나 판매를 예정한 보험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생명보험신탁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주로 신탁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대리점의 지위에 있다.

146) 이지연(2022), p. 43

Ⅳ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규제 개선방안

가. 보험금관리 수단의 신탁 활성화 및 신탁재산 범위 확대

1) 보험금관리 수단의 신탁 활성화

가) 보험금관리와 분쟁 발생의 원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있다.[147] 즉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는 구체적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재산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원시취득하므로 현행 법제상 자신의 소유권적인 권리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11조 참조).[148] 이 경우 구체적인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이 해당 재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유지나 효용으로서 합리적인지 여부 또는 도덕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수익·처분의 법률상 효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제도나 보험계약이 아무리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수익자의 사회·경제·심리적 이익을 배려한 관계를 설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보험수익자 내지 그 관계자의 소유자로서의 의사가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관리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금이 계약상 목적으로 정해진 것과 다른 형태로 탕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4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148)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참조

또한 만약 보험금의 관리가 보험수익자의 친족 등을 시작으로 하는 근친자에 의해 행해져 해당 근친자가 보험수익자의 이익에 반하게 보험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히 미성년자에 관해서는 친권자로 대표되는 친족에게는 매우 광범위한 재산관리 권한이 주어져 있어, 해당 권한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권자와 보험수익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등 매우 한정되고 기술적인 측면에 그친다(민법 제921조 참조).[149] 즉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는 전통적으로 상당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금 관리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러한 유대감으로 먼저 가족 내에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고, 분쟁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거나, 사기 등의 범죄가 행해지지 않는 이상 제3자인 법원이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재산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많은 상황하에서는 재산관리자 후보는 친족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제3자가 재산관리자로서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친족의 재산관리에 횡령 혐의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등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관리자를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기관 내지 전문가라 하더라도 특정한 가족관계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관리를 포함한 미성년자 등의 재산관계에 관한 부정이나 분쟁의 잠재적 가능성을 감지하는 것이 관리자에 대한 감독으로서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보험수익자 측에서 보면 보험사고가 돌발적인 손해의 발생 내지는 관계자의 사망 등의 이상사태인 경우에는 예컨대 손해로부터의 원상회복이나 사망자와 관련된 장례비용 등 해당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목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관련된 사태에 대한 대처가 일단락된 후에는 보험사고 발생 이전과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다소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종전의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의 금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구체적인 개개의 상황에서 현실에 필요한 금원의 금액에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 먼 미래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금원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험수익자가 현시점에서 수중에 두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 내지 그 관계자의 일상생활과는 다른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을 가능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관리에 관한 분쟁의 원인 중 이 점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

149)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계약의 구조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관계, 특히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계약상의 대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보험금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권의 절대성,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구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액의 일괄적인 수취로 인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여 가능성이다. 그리하여 보험금의 관리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의 정기금 급부를 계약상 설계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 가족관계와 이해를 갖지 않는 제3자를 선임하는 동시에 보험수익자의 소유자로서의 의사의 일부에 대해서까지 합리적인 보험금의 활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금의 관리에 관한 상기와 같은 분쟁 원인을 법률상 및 사실상 미연에 방지 가능한 현행법상 법률관계가 바로 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보험금 관리와 신탁의 활용

신탁관계는 당연히 보험금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험금이 신탁재산이 되며, 신탁 목적은 신탁설정 시에 신탁관계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수익자의 중장기에 걸친 안정된 생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급부 및 예측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보전 관리될 것, 보험금 관리자가 수탁자, 보험수익자가 신탁수익자이며, 보험수익자가 신탁관계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필요한 급부를 받을 권리가 수익권이 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신탁수익자)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급부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탁관계의 설정 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어 수탁자가 경제적으로 파산한 경우에 보험금 급부와 관련된 권리가 무가치하게 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관한 수익권 행사로서의 보험금 급부가 상당한 장기간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수익자로서는 신탁재산으로서 보험금 자체가 경제적으로 파산할 위험 외에 관리자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과의 분리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하다.

또한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타인 재산의 관리자로서 적격인 자면 되고, 반드시 보험수익자의 친족 내지 가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과 사생

활상의 측면이 큰 신상간호 부분만을 친족 내지 가족에게 담당하게 하고, 보험금을 포함한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재산관리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수탁자를 별도로 선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은 신탁 목적에 의해 구속되며, 이 신탁 목적에 의한 구속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수탁자뿐인 경우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수익자도 신탁재산과의 사이에 거래 등의 법률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수익자의 보험금 소유자로서의 의사 억제에 대해서도, 신탁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구속함으로써 법률상·사실상으로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보험금 관리에 대해 신탁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신탁의 기본적인 특징인 신탁 목적에 의한 신탁재산의 구속이 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과 신탁관계의 내용, 특히 수익권의 구체적 내용을 신탁설정 시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 관리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탁 목적에 의한 신탁재산의 구속은 수익자 자신의 자의적인 권리행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수익권을 침해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도 동시에 방지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자신에게 합리적인 재산관리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낭비벽, 원격지 거주, 상병 등의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자신에게 재산관리능력이 있는 것 이상으로 신탁관계를 활용함으로써 효용을 더욱 크게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017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으로서 독자적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국민 성금, 보험금 등 15억 원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그 재산관리 수단으로 법원은 임시후견인에게 금융기관과 신탁을 체결하여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150]

이와 같이 법원이 신탁을 통한 거액의 보험금 관리를 맡기는 측면을 고려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관리에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즉 피보험자의 사망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및 각 보험수익자의 취득 비율이 확정되는 동시에, 각 보험수익자는 그 취득

150) 서울가정법원 2017. 4. 17. 2017느단50834 심판

비율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여기에 관여할 수는 없다(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보험계약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해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권리의 취득이나 행사에 개입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신탁에서는 수익자의 확정시기,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수익권자에 귀속하는 수익권의 내용(수익권의 비율이나 우선순위 등) 의 확정 방법, 수익권에 근거해 신탁재산으로부터 각 수익자에게 금전 등이 지불되는 시기 및 액수 등에 대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아래에서 예시한 사례와 같이 생명보험신탁의 수익자나 그 수익권의 보유 비율이 확정되는 시기를 피보험자의 사망 시와 분리하여 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해 보험자로부터 생명보험신탁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재산이 된 사망보험금 상당액의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시기나 금액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 B의 한부모인 A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수익자를 미성년 자녀 B로 하는 생명보험신탁을 설정하였는데 B가 성년이 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본다. B가 피보험자 사망 후 신탁재산인 보험금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와 입학금 등의 목돈 지출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다.

이와 같이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나 수령 방법 등에 대하여 생명보험계약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신탁을 활용하는 의의가 있으며, 생명보험신탁을 활용하는 당사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신탁을 설정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2) 신탁재산 허용범위 확대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신탁재산이 없으면 신탁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양도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재산에 관한 어떠한 이익이라도 신탁재산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에 관한 이익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

신탁재산의 불확정은 '소유권의 이분화'를 저해하고, 따라서 신탁설정 의사의 추정을 뒤집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A가 향후 5년간 매월 200달러씩을 자신의 재산에서 갹출하여

B에게 송금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경우, 관련된 송금의 재원이 되는 금원이 A의 재산으로부터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장래의 증여를 약속했을 뿐, 신탁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신탁설정의 의사는 없었다)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151] 무엇보다도 A가 자신의 전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A가 B에게 매월 200달러를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에 사용제한을 가하는 상황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경우 원래 소유권의 이분화가 도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신탁설정의사가 추정될 수는 없다.

다만, 신탁재산의 특정 요건을 신탁재산의 확정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트코프 교수의 교과서에서는 "a specifically identified interest"라고 쓰여 있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미국 신탁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 장래에 취득할 것으로 기대 또는 존재하기에 이르지 않은 이익은 신탁재산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152]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다. 해당 판례에서 위탁자는 과세상의 우대를 받기 위하여 그 처, 모 및 자녀를 위하여 어떤 주식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이익에 대해 자기신탁을 설정하려고 했으나, 재판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신탁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153]

다만, 주식거래로부터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그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그 범위를 특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개별 계좌에 보관하도록 결정하면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생전에 신탁을 설정할 때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154] 즉, 신탁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아무리 사전에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존재에 이르지 않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소유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다시 처분 행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처분행위를 계약에 의해 사전에 정해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에 의해 신탁이 성립하는 것

151) Unthank v. Rippstein 386 S.W. 2d 134(Tex. 1964)

152) 미국 신탁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1조 참조

153) Brainard v. Commissioner, 91 F.2d 880(7th Cir. 1937)

154) 신탁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16(1). 또한 신탁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10(c)에 따르면, 어떤 재산의 소유권자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또는 선언자 자신 및 그 밖의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해당 재산의 수탁자로 선언하면, 비록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신탁이 설정됨. 그러나 위탁자가 제3자를 수탁자로 설정한 때에는 성립하지 아니함. 이 경우 어떤 재산의 소유권자가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전 증여형 신탁을 설정하고자 할 때, 만약 해당 재산의 소유권자가 그 생전에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명시신탁(Express Trust)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은 아니고, 해당 계약에 근거하는 처분행위의 이행이 이루어져야만 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신탁재산의 특정성을 요구하는 미국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생명보험신탁을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기업가가 1달러를 출연하여 신탁 그릇만 만들고 이후의 추가 신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탁재산의 확정 요건은 미국에서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전통적 신탁재산 외 사망보험청구권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과 같이 혼합형의 보험금청구권까지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155]

요컨대 미국에서 생명보험신탁의 재산은 처분할 예정인 재산이 현존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탁설정 의사의 추정이 즉시 번복되어 신탁의 효력이 부정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본에서는 학설상으로 신탁재산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탁행위 자체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처분의 효과가 신탁재산에 속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156] 또한 신탁재산의 존재를 증시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157] 또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기금에서 받아야 할 의사의 진료 보수 채권과 같은 장래 채권에 대해 공서양속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양도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158] 그 후 민법 개정에서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다고 명기되게 되었기 때문에(일본 민법 제468조 제1항), 적어도 장래 채권에 대해서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양도할 수 없다' 고 하는 미국의 논의의 전제가 더 이상 일본에서는 성립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 신탁법 개정에 의해 신탁계약이 요물계약에서 낙성계약으로 개정되고 신탁은 신탁계약의 체결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일본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의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신탁의 설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신탁의 구조를 이용해 채권양도의 도구로 활용하여 장래를 향한 재산의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159] 일본 신탁법상 신탁재산이란 수탁자에 속하는 재산으로 신탁에 의

155) 양희석(2019), p. 19
156) 四宮和夫(1989), p. 138
157) 神田秀樹(1995), p. 581
158) 最判 平成 11. 1. 29. 民集 第53巻1号 151頁

해 관리 또는 처분을 해야하는 일체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신탁법 제2조 제3항),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산정 할 수 있는 적극재산이면 신탁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160]

일본의 경우 2004년 신탁업법 개정, 2009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 장애 등 사회복지 관련 신탁과 더불어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161] 특히 2012년 치매 노인 등의 재산을 후견인 대신 신탁을 통해 관리하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이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교육자금을 신탁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교육자금증여신탁이 도입되었고, 2015년 자녀 결혼·출산·육아 자금을 신탁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결혼·육아지원 신탁 등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계약이 급격히 증가하였다.[162]

대만의 보험금신탁은 보험법에 근거하여 기본약관에 따라 자익신탁형 구조로 보험금신탁이 설정된다. 그 법률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보험관계(윗 부분)와 신탁관계(아랫 부분)로 구분되며,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보험계약의 수익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양자를 연결하게 된다.

〈그림 Ⅳ-1〉 대만 보험금신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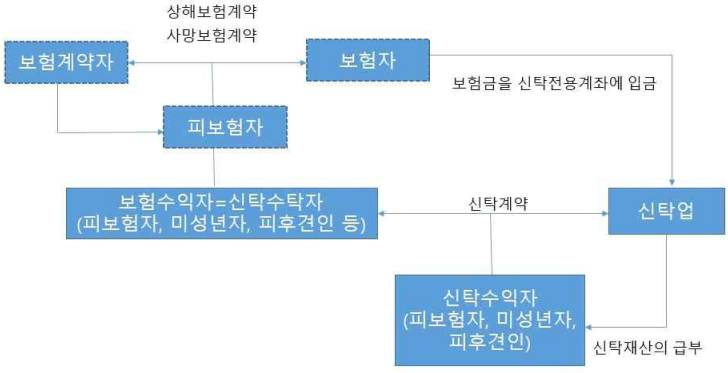

자료: 新井 誠(2023) p. 121를 참조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함

159) 能見善久(2013), p. 30

160) 따라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외국의 재산권 등도 포함되지만, 인격권은 포함되지 않고, 채무는 신탁재산이 될 수 없음

161) 新井 誠(2023), p. 72

162) 2016 日本の信託, 信託協会, 2016, p. 5; 서병호(2021), p. 5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163]이 최종적으로 신탁재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험금 신탁 전용계좌에 지정입금'에 관한 약정서의 기재에 따라 신탁전용계좌에 입금될 필요가 있다고 보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금 신탁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는 보험금을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164]

또한 보험금신탁의 위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를 공동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대만 민법 제1088조 제1항). 양측의 동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특히 대만 신탁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은[165]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신탁계약을 스스로 해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166]

요컨대 미국, 일본, 대만은 신탁재산으로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허용하는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위의 대만의 입법례와 같이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되는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167]

나. 보험금청구권신탁설정 관련 규제 개선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대상, 수익자 범위, 권유자격, 약관대출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하에서 상술한다.

---

163) 대만에서 보험금신탁의 신탁재산은 주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 또는 생명보험(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권임(新井 誠(2023), p. 120

164) 대만의 「보험회사 보험금 신탁업무 공동판매에 관한 주의사항」(2021. 12. 17.) 제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신탁을 취급할 때 신탁계약과 보험금의 신탁전용계좌에 지정입금에 관한 약정서 등의 관계 서류가 필요하게 됨

165) 신탁이익의 전부를 위탁자가 향유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대만 신탁법 제63조 제1항). 원문은 다음과 같음. "信託利益全部由委託人享有者, 委託人或其繼承人得隨時終止信託" (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I0020024 참조)

166) 新井 誠(2023), pp. 120~121

167) 강성호 외(2024), p. 3

1) 신탁대상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요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 요건을 설정해 두고 있다. 즉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시행령 제10호 가목 1)), 금융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보험금청구권 수탁 기준 금액은 3천만 원이다(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의3 참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제·개정 이유서에 보험금청구권 수탁기준을 3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아니하다.[168] 생각건대 소액의 보험금은 상속 절차를 통해 처리하거나, 예금, 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굳이 신탁 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형식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03조의 신탁가능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 부동산 등 어느 것에도 최소 신탁가능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최소금액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169] 해당 규정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는 견해도 있다.[170]

이러한 규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에 있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한 보험을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하고 재해·질병사망[171]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하도록 하면서 최소신탁 가능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을 활용한 보험금 관리와 유족의 생활 보호라는 신탁설정의 목적과는 정합적이지 않은 경직된 규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직된 규제는 다양한 신탁 등의 연계를 어렵게 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도를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하여 가입 건수가 많은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한 청구권신탁, 치매신탁·후견신탁 등의 연계를 통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최소신탁 가능금액을 반드시 법령을 통해 3천만 원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각 회사가 약관을 통해 최소 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일본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면서 최소 수탁기준에 대해 보험업법상 별

---

16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27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참조

169) 양희석(2024), p. 112

170) 이영경(2025), p. 16

171) 이는 재해·질병사망 등의 경우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한 규제임

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신탁회사들에서 1,000만 엔 정도로 최소 보험금청구권의 수탁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탁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르면서, 신탁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안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172] 그리고 일본 신탁협회에서 발간한 신탁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자금증여신탁의 경우 손자 등의 교육자금으로서 조부모 등이 신탁은행 등에 금전을 신탁한 경우에 1,500만 엔(학교 등 이외의 교육자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500만 엔)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1996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신탁된 것에 한함)임을 안내하고 있다.[173] 이는 교육자금으로 증여되는 금액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제한에 해당하나, 여타 금전신탁, 결혼·육아지원, 유언대용신탁, 상속관련업무, 투자신탁, 부동산신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탁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일본의 경우 수탁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본의 수탁기준 관련 사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신탁대상 규제는 일반 사망보장 보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특약사항도 포함하여 이를 결합해 하나의 신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과 같이 법령상 최소 수탁기준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규제하기보다는 3천만 원 미만의 보험금이라도 신탁설정을 고려하는 보험계약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소비할지, 아니면 신탁설정을 통해 분할금으로 수령하여 소비할지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을 통해 자유롭게 수탁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약관대출 관련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0호 가목 4)). 또한 신탁업자는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신탁계약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0호 나목 4)).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후 채무불이행 시 신탁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신탁의 안정성을 위하여 보험계약대출을 금지하는

172)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인터넷 안내자료, p.19
173) 信託協会(2024), p. 7

취지로 보인다.[174]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후 구체화되는 권리인 점을 고려하고, 보험 약관 대출이 비록 보험계약자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한 규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보험금에서 공제되어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신탁재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나, 보험계약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175]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호 각 목의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입법자의 의도는 신탁설정 계약의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사고 발생 후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성을 안정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탁설정계약의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의 존재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보험계약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설정 시 보험계약대출 불가와 같이 과도한 규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자체적인 수익성 판단을 통하여 정한 금액 이하가 되면 신탁계약 종료 사유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형태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176]

요컨대 보험 약관상 보장된 계약자의 약관대출 권리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177] 내에서 사전에 약관대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3) 신탁수익자의 범위 제한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신탁수익자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174) 금융위원회는 위탁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가 다 상환한 경우에도 신탁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라고 함(양희석(2024), p. 112)

175) 양희석(2024), p. 112

176) 일본은 법령에서는 물론 신탁계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약관대출을 금지하지 않고 신탁계약으로 보험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이 500만 엔 이하가 되면 신탁계약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음(양희석(2024), p. 112). 예컨대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안내자료에 따르면 만기보험금, 고도장해보험금 등의 생존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리빙 니즈 특약에 따라 신탁설정되어 있는 보험금의 전액이 청구된 경우, 생명보험계약의 만료, 실효 후 부활기간 만료, 해지된 경우를 생명보험신탁의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음;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인터넷 안내자료, p.21 참조

177) 예컨대 사망보험금 2억 원, 해약환급금 1억 원, 8천만 원까지 사전 약관대출의 범위를 설정하고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청구권신탁의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 외에 약혼자, 사실혼 관계, 동성 간 파트너 관계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수익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신탁의 유연성, 생명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설정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 후견, 복지향상이라는 신탁의 취지에 반한다.[178] 보험금청구신탁은 민법상 후견계약과의 결합을 통하여 복지신탁으로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신탁수익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치매, 장애가 있거나 자산관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공익법인 등을 신탁수익자로 지정하여 유족의 신상보호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179]

예컨대 서로 고령인 부부의 아내 C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생명보험신탁을 설정하고, 남편 D를 제1순위의 수익자로 하여 D의 생존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신탁재산으로부터 D에 대하여 D가 입주하는 고령자 시설에 대한 지급에 필요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취지와 의료비 등의 목돈의 지출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취지를 정하는 동시에, D의 출신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E를 제2순위의 수익자로서, D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E만이 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를 정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금 중 일부는 학교,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고 일부는 유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180] 이러한 사례는 신탁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입법례상 가능한 예인데, 일본의 보험업법상 신탁수익자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신탁업자들이 배포하는 생명보험신탁 안내서에는 수익자의 범위를 개인인 경우와 단체인 경우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다양한 가족관계, 예컨대 약혼자, 내연녀, 동성 파트너에 대해 추가서류의 제출과 전화 확인 등 신탁회사가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익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181] 후자 즉 단체 신탁수익자에 대해서는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독립행정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의료법인, 특정의료법인, 인정NPO법인, 국·지방공공단체(법인 단위로 지정된 단체에 한함), 일본적십자사를 열거하고 있다.[182] 이러한 일본의 신

178) 양희석(2024), p. 113
179) 양희석(2024), p. 113
180) 양희석(2024), p. 113
181)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인터넷 안내자료 참조

탁수익자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입법례는 신탁의 본질적 특성인 유연성을 고려하여 신탁설정행위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지양하여 신탁의 활용과 효용의 측면을 고려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변화된 가구 구성(1인 가구, 동거인, 사실혼 등) 및 계약자 수요를 고려하여 법정상속인(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까지 수익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권신탁(기부신탁 등)을 통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탁수익자 범위에 사회복지단체, NGO 등 공익단체를 포함하는 형태의 규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보험금청구권신탁 권유자격 규제 개선

1) 현행 규제의 문제점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금융투자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은 제외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51조 제1항).

신탁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위탁의 범위와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 및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는 아래의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즉,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신탁계약의 체

182)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인터넷 안내자료 참조

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다.[183]

이와 같이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상 근거를 두고, 각 신탁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면서 신탁상품을 권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되기 이전에 설정된 규제이며, 각 신탁회사가 마련한 투자준칙은 주로 투자성 있는 신탁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에 해당한다.

한편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운용형 신탁이 아닌 관리형 신탁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행 투자대행인에 대해 적용되는 엄격한 행위준칙은 주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적합한 규제이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에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할 경우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관리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 제외한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참조).

2) 보험설계사를 통한 신탁상품 권유 허용

최근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신탁 치매신탁, 후견신탁 등을 새로운 시장측면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주요 대형보험회사들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의 경우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보험설계사들이 신탁판매채널로 활동하면서 신탁을 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엄격한 자격취득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어,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에 적용되는 자격 요건을 보험금청구권신탁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예컨대 청구권신탁이 사망 전 금전채권신탁+사망 후 금전신탁에 해당될 경우, 투자성 있는 금전신탁계약은 신탁회사 임직원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보험설계사의 청구권신탁 체결 권유 시에는 별도의 투자권유자격이 불필요하다.

183) 교보자산신탁 투자권유준칙 참조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운용수익 확보가 목적인 금전신탁과 달리, 생명보험과 신탁을 연계하여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신탁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 금전신탁 전환 시에도 원금손실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 예컨대 정기예금, RP, MMDA로 대부분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이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 전후의 금전채권-금전신탁을 위탁자 생존 시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형식(금전채권신탁) 및 성격(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특정금전신탁의 권유자격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신탁계약체결 단계를 금전채권신탁과 금전신탁으로 분리하면, 금전채권신탁(관리형신탁) 체결권유 단계에서는 별도의 권유자격이 불요하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탁자 사망 전 금전채권신탁에 대한 사항은 투자권유자격 없이도 계약권유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생명보험과 보험금청구권신탁 간 연계성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등) 자격은 최소한 요구되며,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 판매 전 교육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객에 대해 권유하는 신탁상품이 단순 관리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들이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에게 운용형 신탁상품 외의 모든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회사의 경우 신탁상품 판매를 설계사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상품 권유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금청구권신탁계약 체결 권유는 별도의 규정 개정, 예컨대,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의 개정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신탁상품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권유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법적인 제약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보험설계사의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그 권한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해당하고 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참조). 그리고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3, 84조). 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서 실시하는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보험

업법 제85조의2). 이와 같이 보험설계사는 상법과 보험업법상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로 계약체결 등에 관한 권한 범위는 제한적이다. 만약 보험설계사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신탁상품의 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를 수령하는 권한과 같은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개정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험업법의 경우 위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신탁상품자문을 위한 교육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문의 의미가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험업법과 동법 시행령 나아가 보험업감독규정에 신탁자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관리형 신탁만 담당하는 신탁자문사(Trust advisor) 라이선스를 별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184] 즉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같은 관리형 신탁을 권유하기 위해서 신탁자문사를 판매조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185] 이는 향후 신탁시장에서 관리형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탁자문사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신탁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보험금 관리에 대한 신탁상품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신탁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신탁상품 권유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보험금청구권신탁에 투자성이 있다고 보고 체결 권유에 자격을 요구하더라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격제도 예컨대 투자권유대행인 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신탁상품 권유대행인 자격시험을 생명보험협회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후 보험설계사들이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협회 차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신탁의 구조와 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신탁자문에 관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의

184) 이중기(2025), p. 7

185) 이중기(2025), p. 7; 해당 글에서는 "관리형 신탁상품에 대한 판매조직으로 신탁자문사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신탁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형 신탁상품의 판매에도 진출할 수 있고, 이때 신탁자문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요즘 가업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신탁상품 판매조직인 신탁자문사를 활용해 유언대용신탁의 수탁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음.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처럼 유언대용신탁 판매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신탁자문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무를 부여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 취득 후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신탁상품의 권유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Ⅳ-2〉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계약체결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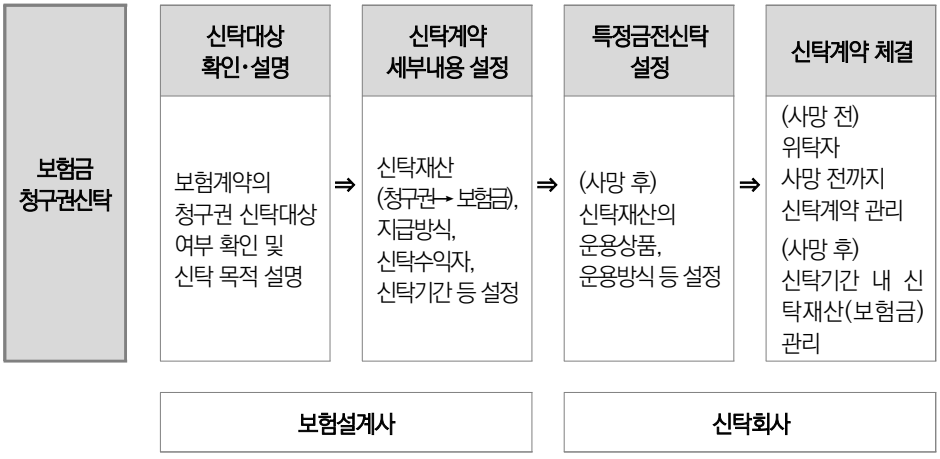

3) 신탁상품 판매 시 행위규제 준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라 함)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금소법은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을 도입하고,[186]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를 구별하였다(금소법 제2조 제8, 9, 10호). 그리고 금융회사를 업종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즉 금소법은 금융회사 등을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투자권유대행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

186)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으로 나누고(제3조), 판매행위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으로 구별하여(제4조),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함으로써 규제차익과 공백을 제거하는 "기능별 규제원칙"을 도입하였음(금융위원회(2016. 6. 28.),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입법예고")

중개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모집인 등으로 정하고(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6호, 제7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4조).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판매하는 신탁회사나, 은행,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해당한다.

금소법상 신탁상품은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기타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신탁상품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투자성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투자성상품에 적용되는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금융상품 설명의무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의 정보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187] 따라서 동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관리형 신탁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의 정도는 위탁자가 그 내용을 알았다면 해당 신탁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이나, 약관상 중요한 내용, 신탁계약의 해제, 무효 사유, 수탁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이 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금소법상 적합성의 원칙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금소법 제17조). 해당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행위규제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금소법은 적합성의 원칙에 대하여 투자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손실감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금성 상품의 경우 적합성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도 신탁상품에 해당하여 형식적으로는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188] 적합성 원칙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연령이나 재산상황

18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1),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p. 6

188) 지금까지 관리형 신탁을 포함한 신탁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회사가 담당하여 왔으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시작으로 보험회사가 관리형 신탁상품을 취급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형 신탁상품의 판매를 금융지주회사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계약체결의 권유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표 Ⅳ-1〉 규제 개선방안 정리

구분	보험금 관리수단	신탁재산 범위확대	설정 관련 규제 개선	권유자격
문제점	분쟁 발생	신탁재산 범위가 협소	• 대상금액: 3천만 원 이상 약관대출 시 신탁 설정 불가능. 수익자 범위 협소(직계존비속, 배우자)	투자권유대행인만 신탁상품 권유 가능
방안	신탁계약 활용	상해질병보험도 신탁 범위 포함	• 대상금액 한도 • 약관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 수익자 범위 확대: 법정상속인(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및 공익단체로 확대	보험설계사 활용 (신탁자문사 라이선스 도입)

2. 관련 법제 개선방안

가. 불공정경쟁행위 금지와 컴플라이언스 준수의무

1)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탁업무 취급기관이 융자나 출자를 통하여 융자 등의 조건으로서 신탁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 독점금지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189)]

내의 어느 회사가 담당할 것인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이 견해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체제 내에 있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관리형 신탁에 대한 주관회사가 되면 금융투자회사와의 업무영역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탁자문사를 도입하여 이들을 판매조직으로 갖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관리형 신탁을 주력으로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이중기(2025), p. 5)

189)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라 목 (4) 참조

한편 신탁회사가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자본시장법 제108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90]

현재 우리나라의 신탁시장 신탁사별 수탁고는 보험업권에 비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융자 내지 투자권유 등의 조건으로 신탁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시장의 공정한 경쟁 측면의 제고를 위해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법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제9호를 개정하여 우월적 지위남용에 관한 규제를 명시하는 형태의 입법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 자본시장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현행과 같음 1.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신탁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90) 참고로 일본의 경우 신탁겸영 금융기관은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겸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한 신탁겸영 금융기관의 근거법에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의 조건 또는 실시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은행법 제13조의3 제4호, 은행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의3 제3호 등). 또한 신탁상품의 구입과 융자, 보증 등을 동 시기에 권유하면서 융자·보증 등을 실행하는 행위나 설비자금 등의 융자를 빨리 실행하고, 지불기일까지 신탁상품에 의한 운용을 권유하는 행위는 설령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우라도 우월적 지위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함(信託協会(2020), p. 17)

2) 컴플라이언스 준수의무

신탁회사의 보험상품 판매채널화 방지를 위한 일정한 행위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회사가 신탁회사가 아닐 경우, 신탁계약을 인수하는 회사가 특정 보험회사를 추천하는 등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창구화 즉 방카슈랑스 규제(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판매 불가, 특정 회사의 보험상품은 25%까지만 판매 가능) 우회를 방지할 수 있는 행위규제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191] 즉 신탁회사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 또는 대리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록 및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192] 이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논거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보험판매에 있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등은 보험업법이나 보험업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 감독지침 등의 준수가 요구된다. 보험업법은 제1조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는 보험모집 시장에서 보험모집의 공평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은행 등에 있어서의 보험판매는 그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등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는 없는 다양한 독특한 규제가 부과되어 보험모집의 공평성 확보와 보험계약자 보호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만약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 신분으로 지주회사 산하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또한 신탁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은행지주회사 산하 은행이 종신보험신탁을 통해 보험가입 정보를 보유하게 되면, 은행지주회사 그룹 내 보험회사로 고객 이탈도 우려된다. 그리하여 생명보험신탁을 도입함에 있어 감독법적 규제로서 생명보험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지행위 규제를 신설하여 컴플라이언스 준수의무를 철저히 할

191) 생명보험협회(2017), p. 9
192) 양희석(2020), p. 559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현행 보험업법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 다음으로 자본시장법 제108조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살펴본다. 보험업법 제100조는 방카슈랑스 규제에 해당한다. 만약 신탁회사가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계약 설정시 다른 보험회사 예컨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동 그룹 소속 보험자회사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규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슷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비슷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유추적용도 쉽지 않다. 따라서 시행령 제2호에 신탁설정을 조건으로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 즉 자본시장법 제108조의 경우를 살펴본다. 일본의 신탁판매 방식의 경우 보험회사와 신탁은행이 협력을 통해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우리 법상 이러한 경우 생명보험회사가 신탁회사가 아닌 은행이 생명보험신탁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은행은 신탁업자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따라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보험가입 우회 권유 금지에 관한 규정, 특정 금융회사 독점 방지 규정 등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에서 말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험가입 우회 권유 금지를 시행령 제109조 제3항 1의2호 사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바목의 규정이 신탁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임을 고려하면, 규정의 체계상 바목의 하위에 특정 행위 금지 즉 보험가입 우회 권유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193]

193) 이상의 내용은 저자의 선행연구인 지광운(2023), pp. 88~90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표 Ⅳ-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신설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사. 신탁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보험모집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험가입을 우회 권유하는 행위

3) 이해상충 방지체계 정비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구조 중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유형의 경우 이해상충에 관한 문제로 인해 법개정 없이는 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 유형은 수탁자가 피상속인과의 사이에서 특정 재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자와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상 금전의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살펴볼 문제가 있다. 즉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194] 또한 수탁자가 보험업을 겸영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신탁재산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탁자의 자기거래 및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95] 즉 수탁자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일 수탁자가 보험업을 겸영하여 보험자와 동일하다면 수탁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되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거래하게 되므로 수탁자의 자기거래 내지 이익상반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신탁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유형은 신탁법상 신탁행위로 허용하거나, 수익자에게 이익상반행위에 관련된 사

194)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3
195)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3

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의 자기거래가 허용되고 있다(신탁법 제34조 제2항). 그러나 신탁업자의 자기거래행위는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된다. 또한 동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의 시행세칙 등에서도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르면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것으로 해석한다.[196]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자기거래 문제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보험신탁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197] 여전히 이 유형은 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겠다.[198]

이러한 논의는 결국 수탁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규정형식에서 오는 해석상의 문제이다. 즉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으로 증권(대통령령을 정하는 증권에 한함)의 매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역시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보험증권을 위 1호의 증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10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199]

다만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 유형을 다양화 하는 측면에서 신탁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신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등에 근거하여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특정 수익자와 다른 수익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196)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4; 안성포(2021), p. 169; 양희석(2019), p. 75; 오영표(2021), p. 78

197) 권효상(2018), p. 266

198) 양희석(2020), p. 541; 안성포(2021), p. 170; 오영표(2021), p. 79

199) 진익(2009), p. 9;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김상훈(2017), p. 17("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역시 입법의 불비로서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조

구체적으로는 신탁업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알리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신탁업은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교류 차단대상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수익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후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으로 보험계약자형 생명보험신탁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나.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민·상법 및 보험업법 개선방안

1) 신탁관계에 대한 민·상법 규정의 유추적용

가) 상속결격과 민법 규정의 유추적용

상속결격사유란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률상 당연히 그자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결격과 위의 신탁수익자가 고의로 위탁자를 해한 경우의 보험자 면책은 구별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한 경우에는 상법 제659조 및 제732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되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이 신탁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민법 제1004조의 일반적인 상속결격 사유에 의하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결격으로 인해 당연히 상속자격이 상실되므로 보험금청구권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200] 따라서 신탁수익자가 법정상속인처럼 추상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004조를, 수증자와 같이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0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민법 제1064조를 유추적용하여 상속결격자 또는 수증결격자는 신탁수익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01] 신탁수익자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탁수익자의 상속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수익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신탁의 종료 시 신탁재산의 처분의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신탁계약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된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상속법 적용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위탁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되는 방식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위탁자로서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제3자를 신탁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와 신탁계약(타익신탁)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구조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상속대체신탁은 위탁자의 수익자변경권(신탁법 제59조 제1항)과 신탁종료·변경권(신탁법 제99조 제1항 본문) 등으로 수익자의 감시라는 전통적인 신탁법원리를 수정하므로 상속대체신탁은 전통적인 상속법과 충돌한다.[202]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원본 및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지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 즉 유언대용신탁에서 유류분에 관한 쟁점은 신탁[203]을 유류분의 적용대상인 유증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가,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수탁자인지 수익자인지 그리고 반환대상이 원물인지 가액인지에 관한 것이다.[204]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말한다. 그리고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

201) 양희석(2024), p.122

202) 정순섭(2021), p. 68

203) 유언신탁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위탁자의 유언에 다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유증과 같으므로 신탁재산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됨(윤진수(2019), p. 946)

204) 안성포(2021), p. 185

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한편 유언대용신탁에 유류분 제도의 적용이 없는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설[205]과 부정설[206]로 나뉘고 판례[207]도 일치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되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 유류분 제도가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이 설정되는 경우 해당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이 유류분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재산에 해당성이 없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이 아닌 신탁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탁법에 두어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208]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무상증여의 실질,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신탁수익자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고,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탁자를 그 상대방으로 할 수도 있다.[209] 그리고 유류분에 대한 비율은 보험금액 중 보험료 총액 대비 위탁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른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210]

205) 정순섭(2021), p. 93; 최수정(2023), pp. 545~547; 홍진희·김판기(2012), p. 311; 김형석(2023), pp. 93~94; 최준규(2018), p. 83; 정소민(2017), p. 226

206) 김상훈(2017), pp. 34~38; 우리나라에서 신탁과 유류분 제도의 관계에 대한 판례는 없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정설의 입장에서 판시하였음(最高裁平成14年11月5日判決(民集団巻 8号, 2069頁)); 사망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납입한 보험료와 등가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가동능력을 대신하는 급부도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7) 상속인이 신탁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위탁자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었고, 수탁자는 해당 재산의 상속인이 아니며,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보다 1년 이전에 진행되었고, 수탁자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1380 판결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가 있음

208) 임채웅(2017), pp. 136~137; 양희석(2024), p. 123

209) 최수정(2023), p. 552

210) 양희석(2024), p. 124

다) 상법 규정의 유추적용

상법 보험편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다. 그런데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수탁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청구권에 설정된 신탁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신탁수익자이다.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신탁수익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신탁수익자가 위탁자를 고의로 해한 경우 상법 보험편상 보험수익자의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상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 제1항).

신탁법은 수익권의 상실이나 박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즉 신탁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 원칙인 선의성 및 우연성 및 공익에 반할 염려가 있다.[211] 따라서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신탁수익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수익자에 대한 부분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해당 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12] 만약 신탁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신탁수익자를 제외한 다른 신탁수익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213]

위탁자가 생존 중 수익자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위탁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자가 사망했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신탁존속 중 수익자가 사망했으나 연속 수익자나 수익자 지정·변경권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신탁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신탁법 제98조, 제101조). 이는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는 결과일 수 있으며, 위탁자의 의도를 해석하면 수익자와 그 유족의 보호를 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법 제733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수익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14]

한편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포기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신탁법

211) 서고은(2019), p. 166
212) 최준규(2018), pp. 85~86
213) 양희석(2024), p. 119
214) 최준규(2018), p. 86; 양희석(2024), p. 120

제57조), 이 경우 처음부터 수익권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만약 연속 수익자나 수익자 지정·변경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자가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면, 그 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신탁법 제101조 제1항).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탁계약서에는 연속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수익자 사망 시 잔여재산을 그 법정상속인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수익자 지정·변경권자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215]

라) 약관의 규정을 통한 의무주체의 명확화

① 위탁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 경우를 보면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가 문제된다. 이 경우 상법 제639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이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인 수탁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216]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즉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는 수탁자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 발생 시 수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실행하여 운용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실제 보험금청구권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수익자인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다.[217] 이러한 보험료 납부의 문제는 보험금신탁이 활성화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는 어디까지나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자로 수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탁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보험료 납부의무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금청구권신탁 약관상 신탁계약의 중도해지 사유인 보험료 미지급 등으로 인한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명기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계약의 수탁자는 보험금청구권신탁재산의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아니다. 다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방식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설정되므로 보험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도구로

215) 양희석(2024), p. 120
216)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6
217)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6; 양희석(2024), p. 118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신탁법과 보험금청구권신탁상품 약관에 따르면 수탁자는 선관주의 의무[218], 충실의무, 이익상반행위금지위무, 이익향수 금지의무, 공평의무, 분별관리의무, 신탁장부 등의 작성, 보존, 지체 의무, 금전의 관리방법에 관한 의무, 위임금지의무 외에 보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보험수익자 등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219] 결국 수탁자의 보험료지급 의무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지 않더라도 신탁계약의 법률관계상 보험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약관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위탁자 사망 시 통지의 주체 및 방법

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보험금청구권신탁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수탁자가 보험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위험이 있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상법 제65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 빨리 인지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수익자이다.[22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수익자인 상속인이 수탁자에게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21]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통지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 약관을 통해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약관상 사망통지인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탁자에게 사망통지인 지정권을 부여하여 사망통지인 확약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위탁자가 사망통지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통지인 확약서와 사망통지인 지정·변경 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망통지인 이외에도 그 밖에 신탁관리인[222] 또는 제3자가 위탁자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사망통

218) KB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서 참조
219) 같은 취지로는 양지훈(2024), p. 182 참조
220)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6
221)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6
222) 신탁관리인이란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를 대신하여 수탁자를 감독하는 자를 말함(신탁법 제67조)

지인 또는 수익자 등을 통하여 위탁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 위탁자 사망에 대한 통지의 주체를 반드시 사망통지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보험업법상 신탁업의 부수업무화

1) 관리형 신탁의 부수업무성 인정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수령하게 된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인 경우 일시에 거액으로 수령한 보험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금 관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권의 절대성,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구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액의 일괄적인 수취로 인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여 가능성이다. 그리하여 보험금의 관리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의 정기금 급부를 계약상 설계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 가족관계와 이해를 갖지 않는 제3자를 선임하는 동시에 보험수익자의 소유자로서의 의사의 일부에 대해서까지 합리적인 보험금의 활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금의 관리에 관한 상기와 같은 분쟁 원인을 법률상 및 사실상 미연에 방지 가능한 현행법상 법률관계가 바로 신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금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근 허용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살펴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하는 신탁으로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이다.[223]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가 바로 수령하지 않고, 수탁자가 해당 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적절히 관리·투자하여 생긴 수익을 수익자가 신탁수익으로 받게 되는 구조이다.[224]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하여 생명보험회사는 약관에 기초해서 보험금의 분할지급과 거치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해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단 지급된 보험금의 신탁을 통해 그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 인정하여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 생명보험회사가 신탁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보험회사가 신탁의 인수를 본체에서 직접 부수업무로 영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는 유연성을

223) 한기정(2009), pp. 80~83;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1
224)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p. 621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관리형 신탁상품으로 적극적 운용 요소가 없는 즉 자산의 보관관리만 요구하므로 증권의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225)]

이와 같이 생명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을 조합하면 고령자 보호 목적 신탁기능 활용, 치매 대비, 후견 대체 신탁 기능 허용, 범정부 차원의 종합 자산관리 제도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 설계를 가능하게 하므로 보험회사가 신탁업을 보험금의 관리 측면에서 관리형 신탁에 대해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보험업법상 부수업무규정 정비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경영건전성, 보험계약자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모두 영위할 수 있으나(네거티브 규제형식)(보험업법 제11조의2), 부수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위의 각 제한사유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부수업무는 보험업법상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현행 보험업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형식을 '보험회사는 보험업 외에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서 경영건전성, 보험계약자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할 때에 무엇이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부수업무의 영위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조화롭게 구축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부수업무에 대해 2010년 개정 이전에는 포지티브 규제를 따랐으나,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에 보험업의 부수업무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 않아 현행

225) 이중기(2025), p. 7

과 같이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혁적인 이유에서도 보험산업을 둘러싼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부수업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의 부수업무를 해석하는 기준은 보험업이 처한 경제현실과 변화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는 독일법상 사회통념의 법리(Verkehrsauffassung)를[226]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민간건강보험(Privater Krankenversicherung)에서 변화된 거래관념과 피보험자의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를 건강 문제에 대해 지식이 있는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건강 문제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보험회사에 점점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 이에 보험회사가 건강 관련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손실의 발생 또는 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안정화하므로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된다.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보험회사의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아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해석하는 것이다.[227] 이러한 해석기준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영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축소해석하기 보다는 확장해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캐나다[228]와 일본[229]의 경우와 같이 열거주의 입법을 취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상 위와 같이 부수업무의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외에 하위 규범 예컨대 시행령이나 보험업감독규정에 '간접적 신탁관리' 또는 '신탁연계 서비스' 형태의 업무를 부수업무로 하고, 구체적으로 생전신탁 연계 상담, 민사신탁 컨설팅, 치매 대비 자산관리 안내 등의 업무를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신탁서비스는 보험업과

---

226) OLG Hamburg Urt. Vom 15. Februar 2000. 9 U 174/98

227) Peter Präve(2005), S. 499

228) 캐나다의 경우 보험업무에 부수하는 업무(Additional activities)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ICA 제441조(1)). 보험회사는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의 사전승인 없이 ICA 제440조(보험회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 및 제441조(보험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사업에 종사할 수 있음. ICA에서 재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비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임

229) 부수 업무의 경우 일본 보험업법 제98조에 고유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일본 보험업법 제98조 제1항 제1-15호 참조). 그중에서 다른 보험회사 등의 업무의 대리·사무의 대행(보험업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은 보험인수 업무에 부수하여 생명보험회사 간, 손해보험회사 간 및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상호 간에 인정되는 것으로, 이른바 공동보험에서의 간사 업무나 비면허 외국보험업자의 총 대리점이나 손해사정의 대리를 맡는 것 외에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생·손보 겸영 시의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사무의 대행 등이 포함됨(시행규칙 제51조). 이 업무의 대리·사무의 대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단, 자회사 등 동일 그룹의 업무 대리·사무 대행인 경우에는 신고로써 충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보험업법 제98조 제2항). 상기 이외의 부수업무는 주로 자산운용업무에서 취득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음. 법정 타업의 경우 보험업법 제99조에 고유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법정타업)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제99조 제1항), 투자조언업무, 배출량거래와 관련된 업무 등(제99조 제2항)을 할 수 있음. 또한 보험금 신탁업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에만 인정되고 있음(제99조 제3항)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수업무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없이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230]

〈표 Ⅳ-4〉 법제 개선방안 정리

민상법 유추적용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경쟁행위 금지	보험업법상 신탁업의 부수업무화
• 상속 결격 • 보험금청구권신탁 상속재산성 인정 (무상증여의 실질,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고려)	• 신탁에 대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 • 신탁회사의 보험상품 판매채널화 우려 • 수탁자가 보험계약이자 보험수익자인 경우	• 관리형 신탁에 대한 보험업의 부수업무성 인정 • 보험금 관리는 보험금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해당
• 신탁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 제1항 유추적용 •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수익권 인정 (상법 제733조 제4항 유추적용) • 약관규정을 통한 의무주체 명확화 (위탁자의 보험료 지급의무 면제 약관상 명문화, 위탁자 사망 시 사망통지인 지정)	•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 • 컴플라이언스 준수 • 이해상충 방지체계 정비	•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에 신탁업에 대한 부수업무성을 명시

라.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과세에 관한 원칙 정립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과세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상속세 과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정하고 사망하여 수익자(상속인)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신탁을 통해 지급 방식이나 시점을 설계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 의무는 발생한다. 만약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하여 손자녀에게 세대생략 상속을 할 경우, 유산취득세 방안[231] 도입 시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230) 이외에도 입법론으로 일본 보험업법 제99조의 법정타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유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업무를 열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위의 각주 참조)

231) 상속세 과세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임. 그러나 2025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세대생략 상속에는 30%(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세대생략 상속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리에 따른 수수료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크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제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자를 지정하는 형태이므로, 위탁자 생존 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신탁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이 언제 증여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신탁이익을 향유할 때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탁계약 도중 수익자가 변경되거나, 수익자가 신탁수익을 포기하는 등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과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 수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원칙이 중요하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도관(導管)으로 기능하여 수탁자에게 이중과세되지 않고 수익자에게 직접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금신탁 관리로 발생한 소득은 최종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제도로서, 아직 세부적인 과세 기준이나 유권해석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법규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신탁의 다양한 활용 형태를 고려하여 세법에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의 본질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수익권 발생 시점, 신탁이익의 귀속 주체 등 신탁의 법적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기능의 다른 금융상품(예: 연금, 특정 금전신탁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신탁세제의 체계적인 정비는 신탁법 개정 후의 신탁의 활용 상황을 보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신탁법 및 신탁 이론에 근거한 과세 관계와 신탁의 이용에 의한 조세 회피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와의 관계가 모호하고, 신탁의 이용에 의한 조세 회피를 중심으로 한

규정의 정비는 다양한 신탁의 이용을 향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 과세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과세의 불명확성은 신탁의 활용에 위축적인 효과를 준다. 향후 신탁의 구체적인 이용을 근거로 하면서 신탁법 이론이나 해석에 근거해 신탁의 이용에 중립적이면서 공평한 신탁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 미국의 신탁세제에 있어서는 수탁자 과세를 통한 수익자 과세가 원칙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신탁세제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탁세제가 조세 회피를 경계한 나머지 지나친 세제에 의해 신탁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경우 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신탁 관련 과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새로운 상속 및 재산관리 수단으로, 고령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과세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할 때, 소유권의 절대성으로 인해 합리적이지 못한 사용·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유대감 때문에 친족에 의한 보험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해도 외부 개입이 어렵다. 친족 재산관리자의 권한이 광범위하며, 법원의 개입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된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면서 보험수익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유권의 절대성, 가족관계의 구조, 보험금의 일괄 수취로 인한 합리적 의사결정 결여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의 정기금 급부 설계, 가족관계와 이해상충이 없는 보험금을 믿고 관리해 줄 제3자의 선임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신탁설정 계약이다.

신탁설정의 법률관계는 위탁자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여 추후 신탁재산의 운용을 통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신탁관계는 재산관리 수단으로서 재산형성 수단인 보험계약 관계와 결합하여 보험금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형태로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모델이 도입되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 구조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보험계약자인 위탁자가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서 신탁금 지급방식을 사전에 지정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탁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관리·운용하면서 발생한 신탁급부를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정된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장애가 있는 자녀나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등에 자산관리 및 상속설계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보험금청구권신

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가족을 위해 신탁이 이용되는 경우의 다수가 생명보험신탁이다. 이러한 보험은 보험회사에 신탁되고, 신탁설정자가 사망 시 보험금이 직접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장시간의 검인(Probate) 절차와 과세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전통적으로 신탁재산의 특정성을 요구하지만,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은 지급 사유 발생 전에도 설정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소액의 초기 출연금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이후 추가 신탁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가능하여 신탁재산의 확정 요건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사망보험청구권뿐만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과 같은 혼합형 보험금청구권까지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보험금신탁이 발전되어 왔다. 양국의 공통점은 신탁제도 자체가 상속계획과 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국의 생명보험신탁 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규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신탁재산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신탁제도 자체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상쇄시키지 않고,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초고령사회에서 재산관리제도로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발히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본은 1970년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그 대응 방안으로 고령자의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에 관한 법적 지원체계를 정비·구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종합자산관리상품으로 신탁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관련 신탁법과 신탁업법 등을 전면 개정하여 상당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4년 신탁업법 개정, 2009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고 있으며, 치매, 장애 등 사회복지 관련 신탁과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일본에서 생명보험신탁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족뿐만 아니라 제3의 인물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설정도 가능하다. 예컨대 보험금 수령인이 지정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 등이 있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이들이 일시에 받는 거액의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생명보험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보험금의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게 금전의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내 신탁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질병 보험금청구권도 신탁대상으로 포함하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의 종합적인 재산관리를 지원하도록 신탁제도와 관련 법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들은 신탁대상 규제 개선, 약관대출, 수익자 범위, 권유자격, 불공정 경쟁 행위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의무, 이해상충 방지 체계 정비이다. 이는 보험청구권신탁이 보험금 관리신탁으로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위탁자가 신탁수익자를 위해 보험금에 대한 관리에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신탁재산을 사망보험금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향후 운용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입 건수가 많은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하고, 치매신탁·후견신탁 등과의 연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3천만 원이라는 법령상 최소 수탁 기준을 삭제하고, 보험회사가 약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최소 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신탁설정 시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하며, 대출 발생 시 신탁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신탁재산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로 보이나, 보험계약자의 약관대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이다. 보험 약관상 보장된 계약자의 약관대출 권리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사전에 약관대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수익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화된 가족 형태(약혼자, 사실혼, 동성 파트너, 1인 가구 등)를 반영하지 못하며, 유족의 생활 안정, 후견, 복지 향상이라는 신탁 본연의 취지에 반한다. 공익법인,

사회 복지 단체 등에 대한 기부 신탁 활성화에도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변화된 가구 구성 및 계약자 수요를 고려하여 법정상속인(예: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까지 수익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해 사회 복지 단체, NGO 등 공익단체를 신탁 수익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주로 관리형 신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자격 요건 및 행위 준칙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 판매의 주요 채널이지만, 현행 규제로는 신탁상품을 권유하기 어렵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특성(운용 수익 확보 목적이 아닌 안정적 지급 목적)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도 일정한 교육 이수 및 완화된 자격 기준을 통해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 판매 전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관리형 신탁만을 담당하는 신탁자문사 라이선스를 별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별도의 신탁상품 권유 대행인 자격시험을 도입하여 보험설계사가 취득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나아가 불공정경쟁행위 금지 및 행위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의무의 강화,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보험신탁을 취급하는 은행이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여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이므로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 되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관련 규정이 선제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위규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과 지급된 보험금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보험회사가 될 수 있고, 여타 금융기관이 높은 수탁고를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자본시장법 제108조와 제109조의 개정을 통해 행위규제 준수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유형의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현행 법률로는 도입이 어렵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의 자기 거래 금지 규정과 금전 운용 방법의 열거주의 규정(보험증권이 포함되지 않음)이 이를 제약한다. 개선방안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신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유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 교류 차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미리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신탁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형 생명보험신탁을 활성화할 수 있다.

둘째, 법제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신탁관계에 적용되는 민·상법규정은 신탁설정의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신탁관계에 유추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상법의 법리가 신탁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민법상 상속결격사유, 유류분 청구, 상법상 신탁수익자가 위탁자를 고의로 해한 경우 수익자에 대한 부분은 보험자가 면책, 수익자 사망 시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수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등 양법의 유추적용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또한 약관의 규정을 통해 위탁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의 경우 수탁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위탁자 사망 시 통지의 주체 및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상 신탁업을 부수업무화 하여 신탁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보험업으로 영위하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보험업법 제2조 제2호 참조)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수업무로 보험회사가 신탁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을 설정할지 말지 고민하는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와 신탁계약까지 맺는 것을 생각하여 보험금 관리 수단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일단 지급된 보험금의 신탁을 통해 그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탁세제와 관련하여서는 신탁세제의 체계적인 정비는 신탁법 개정 후의 신탁의 활용 상황을 보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새로운 상속 및 재산관리 수단으로, 고령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과세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 등이 신탁의 수익자인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성호·이승주(2024),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고동원·권태율(20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제」, 『기업법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70호), 한국기업법학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1),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융투자협회(2012), 『알기 쉬운 신탁상품 이야기』

김상훈(2017),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사법』, 제41권 제1호, 사법발전재단

김성태(2001), 『보험법강론』, 법문사

김용덕(2022), 『주석민법 채권각칙 4』,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진영(2016), "고령화와 자산관리 시대, 신탁업을 부활시켜야 한다", 은행연합회

김형석(2023), 「생명보험과 상속」, 『민사법학(제103호)』, 한국민사법학회

무궁화신탁법연구회·광장신탁법연구회(2021), 『주석신탁법(제3판)』, 박영사

박정희(2020), 「신탁 금융상품을 이용한 노후설계」, KIRI 고령화리뷰, 제38호, 보험연구원

박지홍(2024), 「일본 신탁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제16호),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법무부(2012) , 『신탁법 해설』

서고은(2019),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연구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병호(2021), 「고령화 시대 유언대용신탁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생명보험협회(2017), 『일본 생명보험신탁 운영 사례 조사 자료집』

안성포(2014), 「현행 신탁업의 규제체계와 한계」, 『한독법학(제19호)』, 한독법률학회

_____(2021),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신탁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신탁학회

양지훈(2024),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고

려대학교 대학원
양희석(2019),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법적 문제」, 법학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_____(2020),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및 그 주요 쟁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_____(2024),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 관련 법적 쟁점」, 『보험학회지(제140집)』, 한국보험학회
오영걸(2023), 「신탁법」, 홍문사
오영표(2020),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조세통람
_____(2021), 「유언대용신탁의 활용과 실무상 쟁점」, 『신탁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신탁학회
윤진수(2019), 『주해상속법 제2권』, 박영사
이계정(2020),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61권 제4호
이성남(2022), 『보험업법』, 씨아이알
이영경(2025),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과 과제」, 『금융브리프 포커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욱(2013), 『신탁법실무』, 법률정보센터
이중기(2025), 「보험금청구권신탁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신탁판매채널 확충방안」, 『월간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
이지연(2022), 「일본의 민사신탁(가족신탁)과 생명보험신탁에 관한 검토」, 『월간 생명보험 08』, 생명보험협회
임채웅(2017),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구」, 『사법(제41호)』
재정경제부(2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정소민(2017),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한양법학』, 제28권 제2집, 한양법학회
정순섭(2021), 『신탁법』, 지원출판사
지광운(2023),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진익(2009), 「보험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KIRI Weekly』, 보험연구원

최수정(2023), 『신탁법(제3판)』, 박영사

최준규(2018),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한기정(2009), 「생명보험신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2호, 보험연구원

홍진희·김판기(2012), 「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상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信託協会(2025), “2025日本の信託”, 一般社団法人

_____(2020), “信託業務における公正取引に関する手引”

_____(2016), “2016日本の信託”, 一般社団法人

能見善久, 道垣内弘人(2013), “信託法セミナー 1”, 有斐閣

道垣内弘人(2017), “信託法(現代民法 別巻)”, 有斐閣, pp. 11~12

四宮和夫(1989), “信託法(新版)”, 有斐閣

山口昇(2011), “生命保険金·損害保険金をめぐる評価と課税の実務”, TKC 出版

石川優佳(2018), “第3章 撤回可能信託における撤回権の行使権者”, 弘文堂

矢野 慎治郎(2019), “家族信託と保険 – 傷害疾病定額保険契約が家族信託に組み込まれる場合の法的構造(信託法·信託制度と保険法·保険約款との関係)と保険実務上の課題を中心に –”, 生命保険論集第 (206号), 生命保険文化センタ

神田秀樹(1995), “日本の商事信託—序説”, 鴻常夫先生古希記念「現代企業立法の軌跡と展望」, 商事法務, 商事法務研究会

新井 誠(2023), “高齢社会における信託活用のグランドデザイン 第1巻 信託制度のグローバルな展開と我が国の課題”, 日本評論社

新井誠(2011), 안성포 역, “信託法 第3版”, 전남대 출판부

安居孝啓(2010), “最新保險業法 改訂版”, 大成出版社

野一色 直人(2015), “生命保険信託と課税”, 信託研究奨励金論集 第36号

田中和明(2025), “信託法務大全 第4編 信託業務(仮)”, 清文社

Austin W. Scott & Mark L. Ascher(2001), "THE LAW OF TRUSTS §330", 4th ed

Adam abrahams(2014),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s: An Effective Estate Tax Reduction Technique (Part 2)", ABA section of taxation newsquarterly

_____(2013),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s: An Effective Estate Tax Reduction Technique(Part 1)", ABA section of taxation newsquarterly

Board, Minn. L. Rev(1967), "The Testamentary Life Insurance Trust", *Minnesota Law Review*, 2879

Fogel(2014), "TEACHING TRUSTS AND ESTATES: TRUST ME? ESTATE PLANNING WITH REVOCABLE TRUSTS 58 St. Louis L.J. 805."

Georgiana J. Slade(2009), "Estates, Gifts and Trusts Portfolios: Personal Life Insurance Trust", BNA Tax Mgmt. No. 807-2d

Graham Moffat(2005), "Trusts Law Text & Material", 4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nry G. Will(1976),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s in the Estate Plan after the Tax Reform Act of 1976, 12 Tulsa L. J. 201"

John A. Miller and Jeffrey A. Maine(2021), "Wealth Transfer Tax Planning After the Tax Cuts and Jobs Act",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46:6

_____(2013), "Wealth Transfer Tax planning for 2013 and Beyond", 2013 BYU L. REV. 879

John Denis Haeger(1979), "Eastern Financiers and Institutional Change: The Origins of the New York Life Insurance and Trust Company and the Ohio Life Insurance and Trust Compan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9:1

Office of the probate court administrator state of connecticut(2016), "PROBATE COURT user guide understanding trusts"

Peter Präve(2005), "Das Verbot versicherungsfremder Geschafte" in: Bielefeld, Thomas/Marlow, Sven (Hrsg.), 『Ein Leben mit der Versicherungswissenschaft, FS für Helmut Schirmer』, Karlsruhe

RBC Dominion Securities Inc(2016), “Testamentary trusts A reason to consider amending your Will”, RBC Wealth Management

STEP(2021),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Trusts”

Timothy e. paterick(202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revocable and irrevocable trust?”, podiatry management, september

Underhill, A and Hayton, D(2002), “Law of Trusts and Trustees(16th ed)”, Butterworths

교보자산신탁 투자권유준칙(https://www.kyobotrust.co.kr/download/pdf_investment_recommendation_rules.pdf)

L&G 홈페이지(https://www.legalandgeneral.com/insurance/life-insurance/guides/life-insurance-trusts/)

Christopher Little.co. Financial Advisers 홈페이지(https://www.christopher-little.co.uk/wp-content/uploads/2013/07/Guide-to-writing-your-life-insurance-policy-under-trust1.pd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27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 인터넷 안내자료(https://www.pru-trust.co.jp/trust/pdf/Pamphlet_GIB.pdf)

KB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서(https://img2.kbstar.com/obj/ocommon/241129_insurance.pdf)

信託協会, 生命保険信託 個人のための信託 信託商品／活用方法 信託協会(신탁협회, 생명보험신탁 개인을 위한 신탁 신탁상품/활용방법 신탁협회) (https://www.shintaku-kyokai.or.jp/products/individual/assetsuccession/life_insurance.html)

生命保険信託とは？加入メリットのある人や注意すべきことについて解説(생명보험신탁이란? 가입의 장점이 있는 고객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해설)(https://www.yasiro.co.jp/eitaikuyo/media/archives/9937)

生命保険信託(일본 프루덴셜 생명보험신탁)(https://www.prudential.co.jp/insurance/lineup/shintaku/)

生命保険信託のご案内(일본 소니라이프 생명보험신탁 안내)(https://www.sonylife.co.jp/land/shintaku/)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특별회원	₩150,000원	
개인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연구보고서 2025-08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발 행 일 2025년 7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93021-80-4 (정가 10,000원)
979-11-85691-50-3(세트)